

#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2022년 11월

# 답답한 규제 장벽, 확실히 부수겠습니다!



규제-애로 신고는  
중소기업 ombudsman에게!

[www.osmb.go.kr](http://www.osmb.go.kr) 02-2100-4900

중소기업 ombudsman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정부기관입니다



#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2022년 11월

## 규제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며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전체 일자리의 81.3%를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활약은 위기상황에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술창업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악재 속에도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1,171억 달러를 기록했고, 벤처투자는 사상 최대인 77조 원을 이뤄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중소기업이 직면한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급격한 금리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과감한 규제혁신은 필수적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 및 혁신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활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4,868건의 크고 작은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발굴했고, 이 중 절반 이상(50.7%)인 2,527건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환경, 위생 등 사회적 가치와 상충한다는 이유 등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고질규제 애로 28건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를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도약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일터인 중소기업 분야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은 그동안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중소기업 규제혁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정책 연구를 주관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연구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 온 규제가 적극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1월

중소기업 읍부즈만

백 주 봉

## 규제혁신이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디지털 사회가 일상화되고,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변화 속에서 기존 시장과 산업의 안정을 위해 필요했던 각종 규제들이 신기술·신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주요국의 통화긴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 상승과 고환율, 고물가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혁신 촉진을 통한 新산업 육성과 복합경제 위기상황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맞추어, 저희 중진공도 전국 단위의 조직 강점을 활용하여, 33개 지역본·지부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연간 500여 건 발굴·건의하는 등 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규제개선을 위해 활발히 노력한 결과, 자율·전기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포함해 매년 80여 건의 규제가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지침 마련을 통한 재활용 산업 육성, 대체육의 명확한 표기 지침 마련 건의를 통한 대체육 시장 활성화 등이 좋은 사례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인식하는 규제 개선 체감도는 아직 흡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중진공 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5.1%)은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中企 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0%) 순으로 나타나, 기업 현장에서 개선 수요가 큰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위기에 선제적으로, 변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기업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중진공도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과감하고 창의적인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번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제안들이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을 해 주신 전문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중진공과 협업하여 규제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박주봉 중소기업 ombudsman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학도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  
2022년 11월



# Contents

## 목차

발간을 축하드리며	02
책을 펴내며	04
요약 SUMMARY	08

### I. 서론 \_ 연구 배경 및 필요성

01 규제혁신의 중요성	16
02 왜 中企 규제혁신이 중요한가?	20
0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2

### II. 국내외 규제혁신 지원정책 동향 분석

01 국내 규제혁신 지원정책 현황	26
02 해외 주요국의 규제혁신 지원정책 현황	31
03 정책적 시사점	36

### III. 규제혁신 업무 현황 및 성공사례

01 규제혁신 업무 현황	40
02 기관 사업 규제 개선	40
03 중소기업 규제 애로 중개	44

### IV. 中企 규제혁신 동향 및 수요분석

01 中企 규제혁신 대응 동향	50
02 中企 규제혁신 정책 수요	56
03 中企 규제혁신 필요 분야 및 지원방안	62

### V. 결론 \_ 시사점

01 중진공 中企 규제혁신 지원 방향성 모색	66
--------------------------	----

### VI. 정책 제언

01 中企 규제혁신 정책 방향 제언	74
---------------------	----

### 부록 PLUS

01 규제개선 성공사례	106
02 참고문헌	114

#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 서론 \_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규제혁신의 중요성**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산업 활력 제고와 저성장 기조 극복

- 4차 산업혁명은 첨단 지능정보 기술을 통해 사회경제전반의 변혁 초래

- \*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화,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기술·사업 모델, 빅데이터 중요성 확대

-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된 융합 신사업 관련 규제의 문제점은 ① 융복합산업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규제체계, ②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충돌, ③ 데이터 활용 제한 규제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저해 등임

- ⇒ 시장의 기술발전·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신규 비즈니스 창출과 신산업 육성에 제약 발생

- \* OECD 38개국 중 상품시장 규제 강도 6위,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21)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성장률 둔화와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 저하

- ⇒ 규제혁신은 정부의 별도 재정 투입 없이, 경제·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저성장 기조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왜 중소기업 규제혁신이 중요한가?**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중추적 역할 담당, 경영 여건 개선과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필수적

- 중소기업 수는 전체 기업 수의 99.9%, 종사자수는 81.3% 차지, 중소기업 생산액은 전체 생산액의 36.0%, 전체 부가가치의 39.1% 차지

- \* 기업수: (중소)728.6만개, (전체)729.5만개 / 종사자수: (중소)1,754만명, (전체)2,158만명

- \*\* 중소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32.6만명)의 82.0% 차지

- 우리 경제의 생산과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 어려움 심화

- \* 중소기업 생산지수: ('16)103.1, ('17)106.3, ('18)103.5, ('19)99.8, ('20)96.1, ('21)99.6

- ⇒ 중소기업 생산·혁신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발굴·개선하여,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과 활력 제고 필요

- **연구 필요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경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지원기관 역할 강화방안 연구 필요



## ☞ 국내·외 규제혁신 지원정책 동향

- **국내 규제혁신 추진체계**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최고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심판제도 도입

규제혁신전략회의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최고 결정기구로 신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규제심판제도	피규제자인 기업·국민이 건의하는 규제 애로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아니라,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이 규제개선 수요 여부 결정 및 규제 개선 권고안 마련

- 주요 규제혁신 추진체계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로 구성
경제규제 혁신 TF	관계부처·학계·경제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규제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를 구성('22.6)

- **중소 규제혁신제도** 행정규제 혁신, 신산업 규제혁신, 현장 규제애로 개선으로 구분

행정규제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여 최소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존 규제의 개선과 폐지</li> <li>• (제도) 규제비용관리제(규제영향분석), 정부 규제입증책임제</li> <li>• (개선 필요) 덩어리 규제 개선 미흡, 규제 준비용 산정 및 규제개선 필요성 입증</li> </ul>
신산업 규제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규제공백에 따른 신산업·신사업 창출 지연 해소, 신산업·신사업 창출을 위한 미래 규제 이슈 발굴 및 해소</li> <li>• (제도) 규제샌드박스(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li> <li>• (개선 필요) 사업자간 이해 갈등규제 해결 부족, 위험성 파악 및 미래 규제 이슈 예측 어려움</li> </ul>
현장 규제애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기업 규제애로, 준규제 사항 등의 발굴 및 개선</li> <li>• (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규제개혁신문고</li> <li>• (개선 필요) 수요자 중심 현장애로 개선 미흡, 규제애로 신고·건의 관련 행정 부담</li> </ul>

## I 요약 SUMMARY

- **해외 규제혁신 지원정책** 법률적 제도에 근거, 정부기관이 주관하여 수행 중. 中企 대상 규제영향분석, 피규제자 의견 수렴, 규제 자문수행 등의 지원분야 포함
  - 현장 점점 규제애로사항 발굴과 개선 건의는 민간기구(상공회의소) 등이 담당

규제유연성 분석	규제 신설·강화시 중소기업 대상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의무 규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신규 규제 제정시 이해관계자협의체, 전문가 규제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피규제자, 전문가의 아이디어 수렴 및 공유
규제예보제	피규제자 대상 입법예고된 규제를 사전에 공지하고, 의견수렴 등 소통 강화
규제자문수행	영국 PA(Primary Authority)를 통해 규제 정보제공 및 맞춤형 규제자문 수행

### 🌿 국내 규제혁신 추진 방향

-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규제의 신설·강화 초기 입안 단계부터 최종 확정시까지 중소기업이 규제 입안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마련·확충
- **중소기업 규제혁신 플랫폼** 생애주기별(창업·확장·퇴출) 中企 주요규제 발굴, 핵심 신사업 규제혁신, 불합리한 기존 규제폐지·완화, 지원사업 요건기준 합리화 등으로 나누어 개선현황·결과 등을 원스톱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
- **현장 규제혁신 자문단 구성** 피규제자 대상 규제관련 정보 제공, 규제건의 지원 역할 담당하는 자문단을 구축하여, 피규제자와 규제자간 소통 강화 및 기업의 규제이행도 제고

### 🌿 중진공 규제혁신 업무 추진현황

- **규제혁신 업무 현황** 사업규제 개선(규제입증위원회)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중개로 구성

구분	사업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애로 중개
관련제도	규제입증책임제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제20조)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담당규제	기관 사업 관련 규제	중소기업 규제 전체 (기관 사업 관련 규제 제외)
업무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제규정의 심의·관리 관련 의무	애로사항 정책건의, 규제완화 등의 중개 기업활동규제 완화 관련 수요 발굴
성공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자금 대출시 투명경영이행약정 체결 대상 기준 완화</li> <li>- (기존) 실질기업주·전문경영인 체결 (개선) 실질기업주로 한정 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전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지침 구체화</li> <li>- (기존) 폐배터리 재활용·매각 관련 구체적 지침 부재로, 수거한 폐배터리 재활용 불가능 (개선) 재활용 가능 유형·재활용업 등록기준, 매각허용규정 등 법령 개선</li> </ul>

## ☞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응 동향

- **규제 체감도와 대응현황**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불합리한 규제로 애로사항을 경험했으나, 절반 이상은 정책 중개기관 등에 건의하기보다는 자체 대응

규제 애로 경험(%)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경험 했음(44.6), 경험하지 않았음(55.4)
애로 해결방식(%)	기업자체 대응(58.1), 중진공 등 정책중개기관 건의(14.4), 민간단체 건의(11.3)

- **중소기업 규제혁신 정책 수요** 응답 중소기업은 고용·노동 분야 규제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규제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와 과도한 규제신설 방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부담이 큰 규제(%)	고용·노동(38.2), 자금조달(금융)(15.6), 환경(7.4), 기술개발(5.9), 신산업 사업화(5.7)
개선 필요 규제(%)	금융 지원조건 완화(42.4),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17.5), 서류제출·절차 간소화(9.8), 조달·입찰 참여기준·절차 완화(9.1), 건축·설비규제 합리화(8.2), 수수료·사용료 부담 완화(8.2)
필요대책(%)	중소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신설 방지(27.7), 규제혁신거버넌스(13.7), 덩어리 규제 개선·신산업 규제혁신(9.0), 규제심판제도(5.0)

- **신산업 규제애로** 응답 중소기업 절반 이상(55.1%)은 규제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포지티브 규제, 중복 행정규제, 규제부재 등이 애로요인

신규사업 진출시 애로요인(%)	포지티브 규제(31.0), 중복 행정규제(25.0), 규제부재로 제품개발과 시장진입 불가능(23.0), 국제표준 대비 규제부담 과도(10.0)
규제애로가 큰 기업성장단계(%)	창업 7년 이후(42.5), 창업도약(3~7년)(27.6), 창업 초기(~3년)(16.6), 중견·대기업 진입(7.3)

## ☞ 중소기업 규제혁신 필요분야 및 지원방안

- **규제혁신 필요분야**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규제는 고용·노동과 자금조달(금융) 분야로 나타나, 해당 분야 규제혁신 강화 필요

\* 우리나라 고용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악화(채용률 하락, 부족률 상승)

- 중소기업 인력채용률(%) : ('20)88.2 → ('21)84.0 / 인력부족(%) : ('20)2.1 → ('21)3.1

- **규제혁신 지원방안** 기업경영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장애로 해소 강화 필요

- 중소기업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지원 요건이나 기준도 규제로 체감

⇒ 지원사업의 요건기준 합리화, 절차 간소화, 비용·부담 간소화 등 기업 현장 규제의 적극적인 발굴·개선 필요

### 🍃 시사점 \_ 중진공 中企 규제혁신 지원 방향성 모색

- 中企 규제발굴·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책 반영률 제고
  - (규제발굴) 중소기업 현장 규제발굴 기능 강화
    - ⇒ 핵심규제: 동향조사·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선제적 발굴
    - ⇒ 현장규제: 피규제자를 세분화하여,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규제·애로 발굴
  - (규제관리) 규제혁신 관리시스템 구축
    - ⇒ 온·오프라인 규제 채널을 통해 수집된 규제사항 DB화 축적, 신속 처리 시스템 구축
  - (규제반영) 현장규제 심층분석과 정책연구 수행으로 정책 반영 확대
    - ⇒ 발굴된 규제 유형별 분류 후 개선 필요성·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분석 및 정책반영이 되지 않은 미해결 규제는 DB화하여 정책연구를 통해 향후 개선될 수 있는 논리 개발
- 기관 규제혁신 업무 컨트롤타워 강화 및 대내외 협력 체계 구축
  - 기관 규제혁신 업무를 기획·조정·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금감원·신한은행 등 민간협업을 통한 금융규제 발굴 기능 강화
    - ⇒ 중진공·금감원·신한은행에서 전문관 1인을 센터로 파견, 금융규제애로 개선 기능 확대
- 기관 사업과 규제혁신 업무 연계 강화
  - 지역혁신성장프로젝트를 활용한 지역 中企 규제애로 발굴·개선
    - ⇒ 기존 거버넌스에 규제혁신 분과 추가·규제자유특구 中企 규제혁신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추진
- (중장기) 규제 관련 업무영역 확대(中企 규제혁신 플랫폼)
  - ⇒ 中企 현장 규제혁신 통합플랫폼을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구축(규제 데이터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 🌿 정책제언 \_ 中企 규제혁신 정책 방향 제언

- **中企 규제개선 방향** 기업활동 유연성 제고·규제 품질 제고·공정경쟁 기회 제고
  - (기존 규제혁신 제도적 장치의 개선) ①규제 샌드박스 제도 확대(바이오 기술), ②규제차등화 제도의 개선, ③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확충, ④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규제개선과 中企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품질 개선 중점 추진 필요
  - (中企 규제혁신을 위한 미래 전향적인 제언) ①中企 규제혁신 전담 인력풀 구축 후 개별 中企 규제개선 문제 자문과 규제 이슈 대응, ②중진공 규제혁신 기능·전문인력 확충, ③전문성이 커가는 분야대상 규제 샌드박스 확대
  - 규제를 자주 완화·변화하는 것보다 정해진 규제를 일관성 있게 적용 필요
    - ⇒ 규제설계 단계부터 이해당사자들과 의견 청취 과정 필요, 中企 규제 순응부담 완화
- **중소기업 규제개혁** 경쟁을 도모하고, 융통성을 부여하는 규제체제 구축
  - 신산업 전환·진출 등 중소기업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규제개혁
  - 중소기업이 니치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규제개혁
  - 경쟁을 도모하고 퇴출을 쉽게 하는 규제개혁
  - 중복규제를 제거하고 규제대체방법의 활용을 장려하는 규제개혁
  - 투명성·준수를 중요시하는 규제개혁
- **中企 규제혁신 정책방향** 불합리한 기존 규제 폐지·완화, 중소기업 가중부담 완화(차등화), 지원사업 요건·기준 합리화 등
  - (中企 규제개선 로드맵 설정) 中企 생애주기별(창업·확장, 퇴출) 규제이슈, 대기업과의 관계 차등,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생명, 환경 등)간 균형, 불합리한 규제(요건) 등으로 과제구분 후 담당기관 및 집행 네트워크 등 거버넌스 체계화
  - (中企 규제개선 과제 통합관리 및 축적시스템 구축) 피규제자 입장에서 중소기업 규제목록, 개선 건의사항, 개선현황 및 결과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KOSIME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 I.

## 서론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01 규제혁신의 중요성
- 02 왜 中企 규제혁신이 중요한가?
- 0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I. 서론 \_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01. 규제혁신의 중요성

### ☞ 혁신·융복합 기술 발전에 따른 新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신 필요

(※자료 :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산업연구원, 2021.1)」外)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기술(AI), 빅데이터 등 첨단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사회경제 전반의 변혁을 초래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은 ①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화, ②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기술·사업 모델, ③빅데이터의 중요성 확대라고 볼 수 있음(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
-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된 융합 신산업 관련 규제의 문제점은 ①융·복합산업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기존 규제체계, ②기존 산업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돌, ③데이터 활용 제한 규제로 인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저해 등임
  - 기존 규제 체계로 新기술·서비스 신규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비용 발생
  - 신기술의 등장은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간 충돌을 일으키며, 소비자 및 산업 종사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있음
  -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현행 규제로 인해 신규 기술·서비스 출시를 위한 데이터 확보와 유통이 어려움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산업과 규제】**

구분	융복합산업의 특징	문제점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산업·기술이 융합하여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li> <li>• 전통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그대로 적용시, 다양한 부처에서 업무 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담당부처 및 적용법령의 중복 규제로 시간과 행정비용 부담 발생</li> </ul>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동일 기술·사업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기술이 다양한 산업·서비스에 파급되어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기술·사업 모델을 활용하더라도 새로운 서비스가 고안될 때마다 개별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비효율성 존재**</li> </ul>
데이터·알고리즘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수집·저장·처리가 고도화되고,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신규 부가 가치를 창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과 신규 서비스 출시가 불가능하여 다양한 기술·서비스 출시를 위한 데이터 확보와 유통이 어려움</li> </ul>

\* 자료: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

\*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는 도로운행(국토부), 자동차산업진흥(산업부), SW·통신(과기부) 등에서 담당

\*\* Uber, Airbnb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유해자원을 증대해주는 동일한 사업 모델이나, 차량공유는 여객 운수법, 숙박공유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법의 정비를 요구

-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등 시장의 기술발전·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제도와 규제로 인해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 제약 발생

\* OECD 38개국 중 상품시장 규제 강도 6위,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수준 3위('21년)

\* 100대 글로벌 스타트업 중 승차공유, 원격의료 등 新산업 모델은 국내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 곤란(Didi Chuxing(자가용의 유사운송), Warby Parker(온라인 안경판매) 등 31개사) ('19.8, 아산나눔재단)

-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혁신·신기술 발전에 따른 新시장 선점을 위해 활발히 규제 개선을 추진 중임

**【주요국 규제혁신 추진현황】**

구분	내용
미국	Wait and See 전략(최소규제만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필요한 규제 확대) → (스타십社) 배달로봇 300만건 ↑ 배달, 주행거리 600만km↑, (원社) 최초 드론배송 상용화
독일	모든 규제 초안('17) 및 진행 중인 규제협약과정('18) 공개
영국	The Regulatory Horizons Council(민간자문기구)를 통해 신산업 규제 선제 발굴('20) → (존슨매티社) 수소연료전지 생산시설에 95.9백만불 투자 예정('22.7월)
프랑스	규제 1개 신설시 규제 2개를 폐지하는 one-in, two-out 제도 도입, EU입법 도입시 EU가 정한 요건 이상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17)

\* 자료: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관계부처, '22),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방안(관계부처, '22)

### ☞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산업 활력 제고와 저성장 기조 극복 필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6)』)

- 우리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의해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혁신동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률 둔화 지속
  - \* 경제성장률(%) : ('90년대) 7.1 → ('00년대) 4.7 → ('11~'15) 3.1 → ('16~'21) 2.4
-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면서, 과도한 규제·정부개입 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 주도의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
  - 기업들의 급속한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력도 둔화
  - 민간의 성장·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민간활력은 저하되고 일자리는 단기·재정·고령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
- 산업·노동 분야 체질 개선이 지연되면서 생산성·성장잠재력 하락
  - (공공) 재정 중심 경제운용, 코로나 대응 등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속가능성 우려 확산
  - (노동) 획일적 규제·노사관계 등이 신규채용 확대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제약
    - \* 노동시장 경쟁력(IMD, '22년) : 63개국 중 노동시장 경쟁력 42위, 노동생산성 51위
  - (금융·서비스산업)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금융·서비스 산업 혁신이 지체되며 중소기업·중소기업 생산성 지속 하락
    - \*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 (한국)49.6, (미국)83.0, (OECD평균)80.2
    - \* 중소기업 생산성 성장기여율(%, '01~'07) : (한국)19.4, (미국)34.5, (영국)35.3, (독일)59.4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 위축도 성장세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저출산·고령화가 지속 심화되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전환되는 등 인구 축소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동투입은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 생산가능인구 증감(만명) : ('00)28.2 → ('10)30.7 → ('20)△24.9 → ('22e)△35.5
    - \* 노동투입 잠재성장 기여도(%) : ('11~'15)0.7 → ('16~'20)0.2 → ('21~'22)△0.1
-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과 수요 회복이 더해져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확산
  - \* 국내 원자재가격 상승률('21.7 대비 '22.7, %) : (두바이유) 41.4 (천연가스) 107.7 (니켈) 14.2
  - \* 물가상승률(%) : ('18)1.5 → ('19)0.4 → ('20)0.5 → ('21)2.5 → ('22.1)3.6 → (3)4.1 → (5)5.4 → (7)6.3
  - \* '22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 : [IMF] ('21.10월) 4.9 → ('22.1월) 4.4 → ('22.4월) 3.6 → ('22.7월) 3.2  
[OECD] ('21.12월) 4.5 → ('22.6월) 3.0
- 규제혁신은 정부의 별도 재정 투입 없이, 경제와 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수단이며,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여 재정부담이 큰 상황에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 정부의 활발한 규제개혁에도 국내외적으로 규제혁신 체감도는 낮은 편**

- 그동안 규제개혁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국가경쟁력 및 경쟁국 대비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의 규제수준은 OECD 상품시장 규제 33위(38개국 중),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48위(63개국 중), 세계경제포럼 87위(141개국 중) 등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국내 규제 경쟁력 수준】**

구분	주요 내용
OECD 상품시장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상품시장규제는 OECD 38개국 중 33위로,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6번째로 강한 수준. 정부 기업활동 개입수준은 38개국 중 36위로, 3번째로 강한 수준(21)</li> <li>* 상품시장규제 종합지수: (1위 영국) 0.78, (OECD 평균) 1.43 (한국) 1.71</li> <li>* 주요부문 순위: 상품시장규제(33위), 시장 진입장벽 규제(35위), 창업기업 행정부담(21위), 서비스-네트워크부문 장벽(36위), 기업활동 개입(36위)</li> </ul>
IMD 국가경쟁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63개국 중 27위로 전년 대비 4단계 하락(22.6)</li> <li>• 정부효율성(34→36위)과 기업효율성(27→33위) 부문이 저조했으며, 생산성, 노동시장, 경영활동 등을 포함하는 기업효율성이 전년 대비 6단계 이상 크게 하락</li> <li>• 세부적으로 기업관련 법(Business Registration, 48위), 노동시장(42위), 경영활동(38위), 생산성(36위)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li> </ul>
세계경제포럼 (W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 141개국 중 13위로 양호한 편이나, 규제부담 순위는 87위로 전년(79위) 대비 하락했으며, 인도(26위), 중국(19위), 일본(31위)보다 저조한 편(WEF 경쟁력지수, '19)</li> </ul>
세계지적재산기구 세계혁신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세계혁신지수는 132개 국가 중 5위 차지(21)</li> <li>• 인적자원 및 연구(1위), 지식 및 기술성과(8위), 창의적 성과(8위) 등의 지표가 우수한 편이나, 제도 분야 순위는 28위로 저조한 편임</li> <li>• 제도 분야 세부부문 중 규제환경(57위), 창업 용이성(31위) 등이 저조함</li> </ul>

\* 자료: 전경련(OECD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글로벌 비교), KISTEP(IMD 세계경쟁력 분석), WEF 홈페이지 자료 등 종합

- 또한 정부의 규제혁신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낮은 상황으로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한 우리 경제 활력 제고 필요

\* 규제혁신 만족도 100점 만점 만족도에 49.8점(경영자총협회, '21.6월)

## 02. 왜 中企 규제혁신이 중요한가?

### 중소벤처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 담당

- 중소기업 수는 728만 6천개로 전체(729만 5천개)의 99.9%를 차지, 종사자 수는 1,754만명으로 전체(2,158만명)의 81.3%를 차지, 매출액은 2,673조 3천억원으로 전체(5,660조)의 47.2%를 차지(2020년)

【연도별 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구분		2017	2018	2019*	2020*
기업체 수(개)	전체	6,301,013	6,643,756	6,898,958	7,295,393
	중소기업(비중, %)	6,296,210(99.9)	6,638,694(99.9)	6,890,203(99.9)	7,286,023(99.9)
	대기업(비중, %)	4,803(0.1)	5,062(0.1)	8,755(0.1)	9,370(0.1)
종사자 수(명)	전체	20,094,913	20,591,641	21,254,650	21,580,496
	중소기업(비중, %)	16,689,525(83.1)	17,103,938(83.1)	17,273,909(81.3)	17,541,182(81.3)
	대기업(비중, %)	3,405,388(16.9)	3,487,703(16.9)	3,980,741(18.7)	4,039,314(18.7)
매출액 (억원)	전체	53,233,447	54,911,068	56,295,399	56,599,655
	중소기업(비중, %)	25,874,890(48.6)	26,628,830(48.5)	26,537,548(47.1)	26,733,019(47.2)
	대기업(비중, %)	27,358,557(51.4)	28,282,238(51.5)	29,757,852(52.9)	29,866,636(52.8)

\* 1인 이상 전 산업 기준(통계청 전국기업체조사 재편.가공, 중소기업본부)

\* '19년, '20년 통계는 신규 통계작성 기준('20년) 반영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자산 총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

- 중소제조업은 전체 생산액의 36.0%(557조원), 전체 부가가치의 39.1%(217조원) 차지(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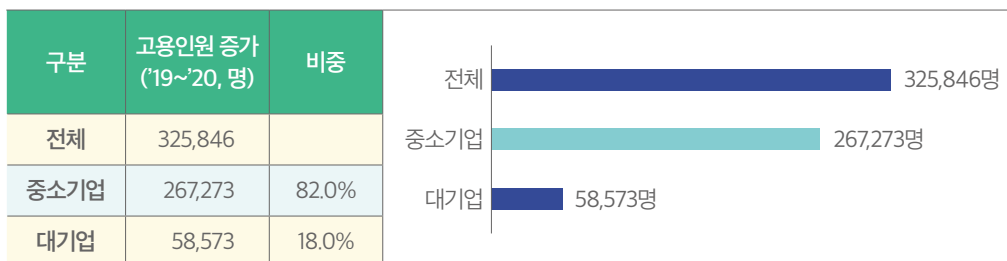
【연도별 생산액 및 부가가치】

구분		2016	2017	2018	2019
생산액 (억원)	전체	14,071,530	15,105,642	15,675,135	15,449,080
	중소기업(비중, %)	5,318,612(37.8)	5,510,925(36.5)	5,559,097(35.5)	5,566,017(36.0)
	대기업(비중, %)	8,752,918(62.2)	9,594,717(63.5)	10,116,038(63.5)	9,883,063(64.0)
부가가치 (억원)	전체	5,020,889	5,413,259	5,628,751	5,547,877
	중소기업(비중, %)	2,080,050(41.4)	2,112,011(39.0)	2,128,115(37.8)	2,171,600(39.1)
	대기업(비중, %)	2,940,839(58.6)	3,301,248(61.0)	3,500,636(62.2)	3,376,277(60.9)

\* 10인 이상 전 산업 기준(통계청 전국기업체조사 재편.가공, 중소기업본부)

- 특히, 중소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32.6만명)의 82.0%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용의 중추적인 역할 담당  
\* '19~20년 전체 고용인원 32.5만명 증가, 중소기업은 26.7만명으로 82% 차지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도】**



**III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 혁신이 필수적임**

-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과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차질 장기화, 산업구조 전환 리스크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2016년 103.1에서 2021년 99.6으로 감소하였으며, 출하지수 또한 2016년 103.4에서 2021년 98.8로 감소함
  - 재고지수는 2016년 98.7에서 2021년 115.6으로 증가한 반면, 평균 가동률은 2016년 73.3에서 2021년 71.2로 감소함

**【중소제조업 생산동향】**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생산지수	103.1	106.3	103.5	99.8	96.1	99.6
출하지수	103.4	105.9	103.0	99.9	95.9	98.8
재고지수	98.7	102.9	104.1	108.0	95.9	115.6
평균가동률	73.3	73.1	73.0	73.3	68.7	71.2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제조업 경기전망조사  
\* 단위: (생산지수·출하지수·재고지수) 2015년=100 기준, %

-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비용상승 리스크를 극복해야 함  
⇒ 중소기업의 생산 및 혁신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활력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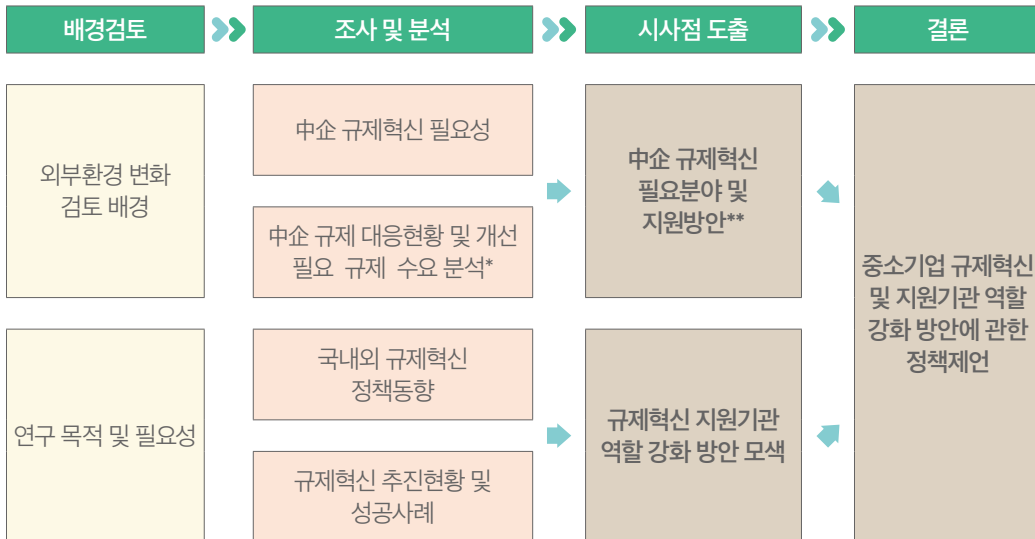
### 0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혁신·신기술 발전에 따른 新산업 육성 및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해 신속·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수적임
  - 규제혁신은 정부의 예산 투입 없이 경제와 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으며, 코로나 19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여 재정부담이 큰 상황에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 국민경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규제 혁신을 통해 新산업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中企 규제 혁신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
  - 특히, 정부는 규제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제시 필요
  -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규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신규 업무영역 발굴 등 정책중개기관 지원기관 역할 강화방안 모색

\* 규제혁신 필요분야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지원기관 역할강화 방안 모색

#### [연구모형 설계]



\* 설문조사를 통한 中企 규제혁신 동향 분석(모니터링 조사 등)

\* 문헌자료조사(정부 발표 정책자료, 선행연구 등)

\*\* 면접자문 등(외부 정책 전문가 자문 활용)





# KOSIME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 II.

# 국내·외 규제혁신 지원정책 동향

- 01 국내 규제혁신 지원정책 현황
- 02 해외 주요국의 규제혁신 지원정책 현황
- 03 정책적 시사점

## II. 국내·외 규제혁신 지원정책 동향



### 01. 국내 규제혁신 지원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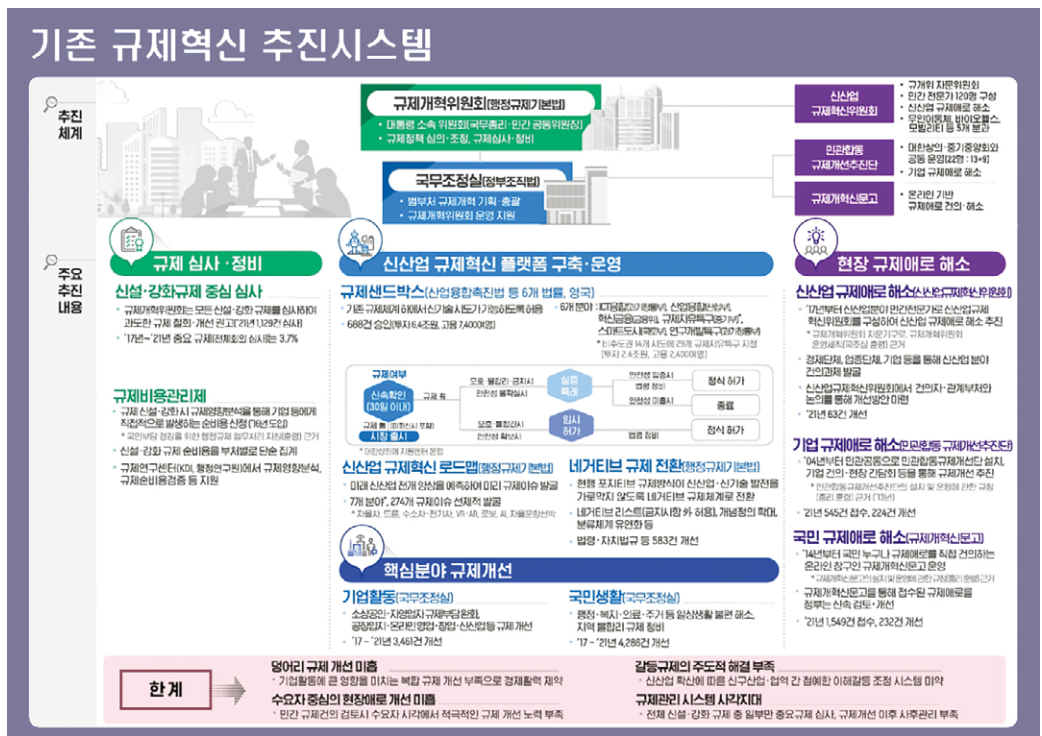
#### ■ 국내 규제혁신 추진체계

##### ☞ 주요 규제개혁기구

(※자료 : 「중진공 중기 규제혁신을 위한 역할 고도화(중진공·중기연, 2022.9)」)

- (규제개혁위원회) 대통령 소속 규제혁신의 컨트롤타워로서 규제 정책을 심의 및 조정,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
  -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안건을 사전에 검토 또는 조정,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비용분석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산하에 설치
  - 규제개혁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으로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고 발표하며, 기업 현장의 규제혁신에 관한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활용하여 기업과 학계의 의견 청취
- (규제혁신전략회의) 정부는 강력하고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고 결정기구로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의 신설
  - 규제혁신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및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임
- (규제심판제도) 피규제자인 기업·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 피규제자인 기업 또는 국민이 건의하는 규제애로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규제개선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하여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여 중립성과 균형성을 높이고자 함
  - 또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함

[기존 규제혁신 추진체계]



\* 자료: 국무조정실(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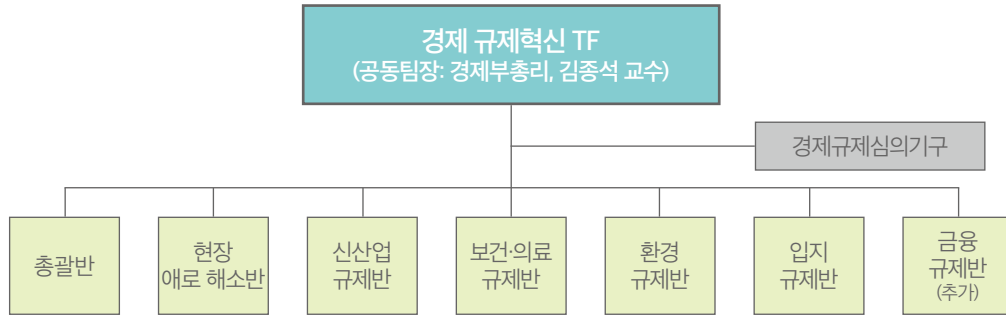
[현 규제혁신 추진체계]



\* 자료: 국무조정실(2022)

- (경제 규제혁신 TF) 최근 기획재정부는 6월 23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민간 중심의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음
- 관계부처·학계·경제단체 등 각계 추천을 받아 규제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과 함께 작업반을 7개로 구성함

**【경제 규제혁신 TF】**



\*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2)

**☞ 中企 관련 규제혁신추진체계**

- 중소기업 관련 국내 규제혁신제도도 크게 ‘행정규제 혁신’, ‘신산업 규제 혁신’, ‘현장 규제애로 개선’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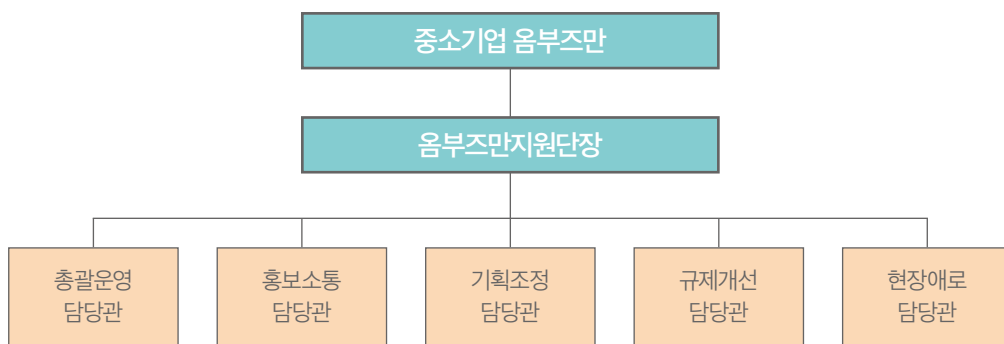
부처	행정규제 혁신	신산업 규제 혁신	현장 규제애로 개선
목적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및 최소화	신산업·신사업 창출을 저해하는 기존규제의 해소 및 폐지	기업경영활동 및 현장 규제애로 해소
법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규제특구법」 등	「행정규제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등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여 억지 및 최소화</li> <li>•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존규제의 개선과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공백에 따른 신산업·신사업 창출 지연 해소</li> <li>• 신산업·신사업 창출을 위한 미래 규제 이슈 발굴 및 해소</li> </ul>	기업 규제애로, 준규제 사항 등의 발굴 및 개선
제도	규제비용관리제(규제영향분석)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규제샌드박스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전담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혁위원회</li> <li>•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혁위원회</li> <li>• 신산업규제위원회</li> <li>•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혁위원회</li> <li>•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li> <li>•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li> <li>• 규제개혁신문고</li> </ul>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덩어리 규제의 개선 미흡</li> <li>• 규제순비용의 산정 및 규제개선 필요성 입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규제의 해결 부족 (사업자간 이해갈등 조정 부족)</li> <li>• 위험성 파악 및 미래 규제이슈 예측의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 중심의 현장애로 개선 미흡(규제부처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 부족)</li> <li>• 규제애로 신고건의 관련 행정 부담</li> </ul>

## ■ 규제혁신 추진기관

### 중소기업 ombudsman

- 2008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중소기업 ombudsman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는 독립 기관임
  - 중소기업 ombudsman은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 활동보고, 직무수행관련 관계기관 조사 및 의견청취, 처리결과 공표 등의 역할을 담당
  - 중소기업 ombudsman이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ombudsman 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
- \* 중소기업 ombudsman 지원단의 역할은 규제의 발굴·개선(건의, 권고), 애로사항 해소, 규제애로 조사·분석, 개선 사례 평가 및 분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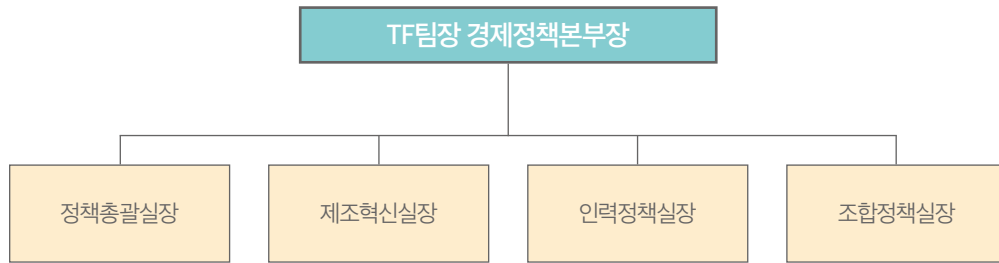
#### [중소기업 ombudsman 조직도]



\* 자료 : 중소기업ombudsman 지원단(2022)

### 중소기업중앙회

- (기능 및 역할)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AI 및 데이터 기술 등 기반 확보, 중소기업의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중소기업 정책의 심의·조정, 민관 협력을 통한 규제·제도개선 기반을 마련, 신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 (규제 관련 업무) 2019년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 2020년 정부인증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2021년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협의하여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를 건의
  - 2013년 11월 정부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동하여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운영
- 최근 중소기업 규제혁신 TF를 구성하여 현장의 기업 애로 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요 역할은 소상공인 규제와 중소기업의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조사 및 연구하며, 규제혁신 정책을 제안하는 것임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22)

### 대한상공회의소

- (기능 및 역할) 주요 경제현안에 대응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며,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과 친기업 정서 확산 등의 업무를 수행
- 규제업무는 조사본부와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음
  - 조사본부 경제정책실과 산업정책실에서 주로 규제애로를 발굴하며, 규제샌드박스실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규제샌드박스 컨설팅과 제반 지원
  - 경제정책실에서는 경제 및 기업조사 등 관련 규제가 문제가 될 때 이에 대한 대응 및 자료 분석, 자료 작성 등을 하고 있음
  -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등 고용 관련 문제는 산업정책실에서 주도적으로 현안 대응, 부처 대응, 자료 작성 등을 담당
  -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경우는 규제샌드박스실 중심으로 건의가 이루어졌음

### ■ 시사점

- 중소기업 규제혁신 과정에서 현장과 밀착하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을 갖는 민간기구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모두 기업 경영활동 또는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개선 또는 해소를 건의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혁신추진단을 함께 운영하여 규제혁신 민관파트너십을 강화
  -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규제샌드박스 관련 신청 및 접수의 창구 기능을 수행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하여 현장의 규제 애로 발굴 및 개선업무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존의 규제업무 이외에 '전국상의 규제혁신 HOT-Line' 신설하여 기업 현장 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건의를 받는 현장 창구의 기능을 강화



## 02. 해외 주요국의 규제혁신 지원정책 현황

### 미국

#### 중소기업 옹호실(Office of Advocacy)

- (설립근거) 옹호실은 행정부(Executive Branch)이며 옹호실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나, 상원(House)의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통해 행정부(대통령)로부터의 독립성 담보
- (역할) 중소기업(사업체, 소규모 정부 및 기관, 비영리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친화적인 경영환경 조성 목적
- (주요업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영향분석인 중소기업 규제유연성 분석 검토
  - \*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 있는 규제정보국(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비롯하여 모든 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 \* 「규제유연성법」: 연방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때 연방기관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로, 우리나라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을 규율하는 법률에 해당함 (1980년 연방법률로 제정하여, 각 연방기관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규제(규칙)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
- 중소기업옹호실은 각 연방부처의 규제 신설과 규제 강화 관련 의사결정에 대해 개선권고 등의 직접적인 개입 권한은 없으며, 각 규제입안기관인 연방기관이 수행한 규제유연성 분석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보완 권고 기능만 수행하고 있음

#### 규제 관련 중소기업 의견 수렴 절차

- (이해관계자협의체) 「중소기업 규제집행공정화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SBREFA)」은 특정 연방행정기관이 중소기업의 상당수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제정할 때 이해관계자 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SBREFA 패널\*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함
  - \* SBREFA 패널은 연방규제 신설 또는 강화 입안 초기단계에 중소기업의 의견을 규제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함
- (규제 라운드 테이블) 현안 규제에 대해 규제 소관 연방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규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이해가 상충되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특정 전문지식에 대한 전문가 자문 아이디어를 공유함

## 규제 예보제

- 중소기업옹호실은 미국 연방기관이 입법예고한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일괄적으로 발송하거나 대상을 정해서 발송하여 피규제대상인 중소기업이 입법예고된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함
- 규제예보제는 연방관보에 등록된 자료 및 데이터 크롤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여 유형화한 후 일반 중소기업 또는 특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신설 또는 강화 규제 정보를 취합하여 규제의 주요 내용과 의견수렴 등 소통 채널로 활용하고 있음

### 【규제 예보제 활용 사례】

REGULATORY ALERTS

Search... SEARCH

### SEC Requests Comments On Amendments To Shareholder Proposal Rule

By Office Of Advocacy — On Jul 27, 2022

On July 27, 2022,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published proposed amendments to three of the substantive bases for exclusion of shareholder proposals under Exchange Act Rule 14a-8:

- the substantial implementation exclusion;
- the duplication exclusion; and
- the resubmission exclusion.

In a [statement](#) released on July 13<sup>th</sup>, Chair Gary Gensler stated that the amendments “would provide greater certainty as to the circumstances in which companies are able to exclude shareholder proposals from their proxy statements.” In an Initial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 (IRFA), SEC notes that the proposed amendments will affect small entities that are either shareholder-proponents that submit Rule 14a-8 proposals or issuers subject to the federal proxy rules. SEC requests public comments on its IRFA, and specifically requests comments on the number of shareholder-proponents that may be considered small entities and how the proposed amendments would affect small entities.

The comment period closes September 12, 2022.

- [Read the Federal Register notice and submit comments.](#)
- [The public may also submit comments by email to \[rule\\\_comments@sec.gov\]\(mailto:rule\_comments@sec.gov\). Email comments should include EIR#](#)

Navigation

- ▶ News Articles
- ▶ Subscribe
- ▶ About

Topic Categories

- ▶ Agency Roundtables
- ▶ Alerts Archive
- ▶ Annual Report On The RFA
- ▶ Annual Reports Of The Office Of Economic Research

\* 자료: Office of Advocacy(2022, <https://advocacy.sba.gov/category/regulation/regulatory-alerts/>)

## 민간 부문 규제 혁신 사례

### 오하이오 상공회의소(Ohio Chamber of Commerce) 정책위원회

- 고용주가 주 의회에 기대하는 바를 입법자들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공공 정책 우선 순위 목록(list of Public Policy Priorities)’을 작성
-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요구사항을 연구하고, 주요 입법 문제에 대한 오하이오 상공회의소의 입장을 확립하여 입법적 측면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
- 교육 및 인력개발, 에너지&환경, 기회의 평등, 헬스케어, 기업회복 지원(팬데믹), 노동 및 고용, 공공 업무, 스포츠 비즈니스, 세금, 근로자 보상을 주요 이슈로 구성

### 【2022년 여름 오하이오 상공회의소 134대 총회 입법 아젠다】

1. 오하이오 주의 근로자와 학생들에 대한 주 소득공제, 목표 장학금 및 학생 지원 확대
2. 고용주에게 의료 보험 의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세금 공제 제공
3. 오하이오 주의 다양한 사이버 범죄 법을 업데이트하여 사이버 범죄의 빈도 감소
4. 주요 교통 위반 운전 중에는 전자 무선통신 장치 사용
5. 적절한 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승인
6. 오하이오 주 IT 시스템의 현대화, 중앙 집중화 및 향상 요구
7. 재소자의 보석을 정할 때 공공안전이 심사 요소로 포함되도록 요구
8. 전기자동차 인센티브와 인프라 구축

### 📁 오하이오주 6개 주요 기업협회(Ohio's 'Big 6' Business Associations)

-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 Table), 상공회의소, 자영업자 전국연합, 소매상인협의회, 제조업협회, 농민연맹 등을 포함한 기업협회는 조세, 규제, 교육 및 에너지 분야 입법목표를 제시하는 입법 우선순위를 발표(21.5)
- 입법자 및 정책입안자 대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원 및 주 행정각부에 전달
  - 당시 권고사항 중 다수는 COVID-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었으며,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세금인상 회피, 높은 교육수준 유지, 인력육성, 실업 보상의 내용으로 구성

## 🇨🇦 캐나다

### 🗨️ 캐나다 상공회의소

-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멤버로 구성된 정책위원회(Policy committees) 및 협의회에서 비즈니스의 성공에 중요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책 옹호, 연구 및 개발
- 정책위원회와 함께 회원사들이 매년 정책프로세스로서 '정책 결의안'(Policy Resolutions)을 제출하고 연례총회(AGM, Annual General Meeting)와 협의회에서 회원사들의 투표를 통해 채택하여 매년 발표
- 규제과제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서의 규제 문제, 규제 방향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농식품 부분에 대한 많은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져 투자, 혁신 및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음을 언급
  - 이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에 '규제 및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여 승인시간을 단축하고 업계가 신기술 관련 규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

### 🗨️ 브리티시컬럼비아 상공회의소(BC Chamber of Commerce)

- 상공회의소의 연례회 정책 세션에서 회원사들이 채택한 정책성명이 포함된 '정책적 입장에 대한 매뉴얼'을 매년 발간하며, 이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 제출되거나 계류 중인 정부입법 및 규정에 회원사들의 개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각장관에 개별 요청
- 효과적인 공공정책의 원칙으로서 규제, 과세, 그리고 정부 서비스 프로그램 및 인프라 제공 등 이 세 가지가 기업뿐만 아니라 브리티시컬럼비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규제방향을 제시
  - 규제방향으로 효과성(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측정), 형평성, 비용 효율성, 시기적절성(주기적인 검토의 대상), 예측가능성, 투명성, 유연성(변화 상황 대응), 통합 및 조정(단일 프로세스로 간소화)하도록 원칙으로서 제시

## 🇪🇺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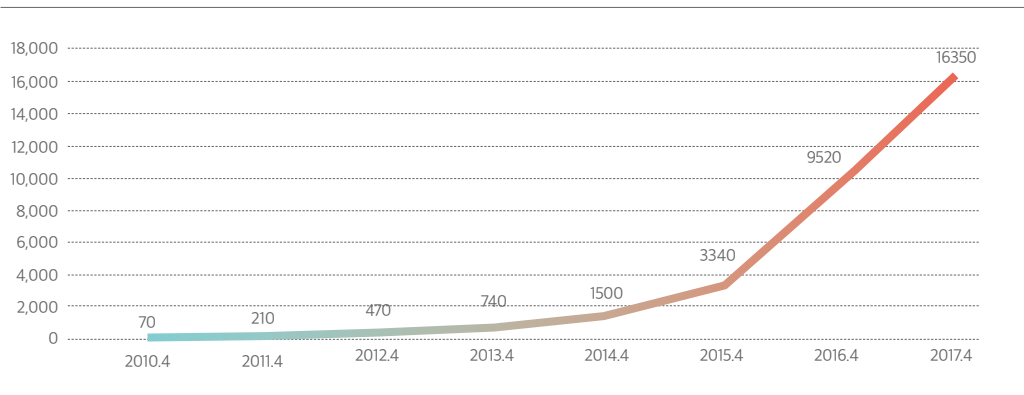
### 🗨️ 유럽 산업계 라운드테이블(ERT, European Round Table of Industrialists)

- (개요) ERT는 유럽의 주요 산업계를 포함하며 회원들의 포괄적인 지식과 광범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럽 비즈니스 그룹임
- (역할) 유럽의 주요 정책 세력 중 하나로서 EU의 정책적 의제 설정에 참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일반적으로 ERT는 경쟁, 자유시장 통합 및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를 촉진
  - ERT는 회원들의 무역 및 경제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과 광범위한 경험을 활용하여 EU 집행부 장관들과 초안을 마련함으로써 입법 절차를 시작하는 EU 위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적인 정책 옵션을 제공

## ☞ 영국 PA(Primary Authority)

- (설립목적) 2009년 4월 영국 정부는 일관성 있는 규제집행을 위하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법적 체계(Statutory Scheme)를 도입
  - PA는 지방 중소기업의 규제이행부담을 완화하고, 규제기관의 규제전달(Regulatory Delivery) 절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
- (주요업무) 지방 중소기업 대상 규제 관련 정보 제공 및 규제 자문 수행
  - 기업은 소위 'PA규제자문(Primary Authority Advice)'이라고 불리는 주 규제기관(primary authority)의 규제자문을 얻고, 지방 규제기관(local authorities)에 대응 가능
  - 기업 대상 규제 집행시 지방 규제기관은 그 이전에 주 규제기관에 먼저 통지(notify)해야 함. 규제가 기존 PA 규제자문에 어긋난다면, 주 규제기관은 그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 가능
  - PA제도는 기업이 PA규제자문을 받아 이를 준수한다면,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기업 대상 제공
- (적용대상) PA제도는 지방 규제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특정된 규제기능에 한해 적용
  - 환경보건(environmental health), 인-허가(licensing), 거래표준(trading standards), 화재 안전(fire safety) 기능을 하는 지방 규제기관에 적용
- (기대효과) 단일한 규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환경·보건(environmental health), 거래 기준 또는 화재안전 규제에 관한 확실하고 맞춤형 규제자문을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임
  - 또한, PA규제자문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피규제자인 지방기업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규제 집행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며, 피규제자인 기업의 규제 준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옴
- (파트너십 구축) PA 파트너십은 특정 규제기능과 관련하여 영국 정부(Secretary of State)가 지명한 하나의 지방 규제기관과 체결
  - 기업은 PA와 직접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주로 PA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가능한 조합 혹은 협회 등과 같은 조정자(co-ordinator)를 통하여 PA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참여
- 2011년 이후 Primary Authority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Primary Authority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전체의 95%가 중소기업이며, 대부분 종사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구성됨

【PA 참여 사업체 증가추세】



자료: BEI(2017.12). Primary Authority Overview

## ● 일본

### ☞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

-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를 중심으로 경제계가 직면하는 국내외의 광범위한 중요 과제에 대하여 경제계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언 의견\*\* 등을 웹사이트에 공표

\* 경제 단체 연합회는 일본 대표기업 1,494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주요 업종별 전국 108개 단체, 지방 47단체 등으로 구성('22. 4월 기준)

\*\* 제언 의견은 중합정책, 경제정책/재정·금융/사회보장, 세금/회계/경제법제/금융제도, 산업정책/행정개혁/운송유통/농업, 도시주택/지역활성화/관광, 과학기술/정보통신/지적재산 정책, 환경/에너지, CSR/소비자/방재/교육/D&I, 노동정책/노사관계/인사임금, 경제연계/무역투자, 국제 협력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

- '제언' 활동에는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항목을 정리하여 요구하는 활동이 포함되는데, 일례로 2021년에는 '2021년도 규제개혁 요구 : DX와 규제 개혁의 순환을 확립한다'를 공표  
- 해당 제언은 모든 회원 기업·단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규제 개혁 75개 항목을 정리

### ☞ 도쿄상공회의소

- 기업설문을 토대로 한 정책(입법) 제안서·요청서를 정부나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제안내용 실현을 위해 간담회 및 세미나·설명회 등을 개최
- 정책(입법) 제안 부문은 중소기업 정책, 에너지정책, 회사법 개정, 지적재산 경영지원, 민법·상법 개정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
- 지난 2021년에 일본상공회의소 및 도쿄상공회의소에서 '2021년도 규제·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공표하여 정부와 관계부처에 제출  
- 의견서의 주요항목으로는 ①규제의 도입과 재검토 연동 구조의 재구축과 ②규제·제도의 재검토에 관한 개별의견, ③행정절차의 개선에 관한 의견으로 구성

#### 【규제·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규제도입과 재검토 연동구조 재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 도입시 가시화 촉진(사전평가제도를 철저히 하고 도입규제의 사전 공표)</li> <li>규제영향평가 개선(사전평가체제 개선, 평가서 활용 확대와 심의회 역할 개선)</li> <li>사업규모 배려와 규제 재검토 구조의 도입(획일적 규제의 재검토, 불필요한 규제가 방지되지 않는 구조의 도입)</li> </ul>
규제·제도의 재검토 관련 개별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의 창의성을 살린 지방정책의 추진</li> <li>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노베이션 지원, 다양한 인재의 활용 추진</li> </ul>
행정절차의 개선에 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화·온라인화 추진과 편리성 향상 요구</li> <li>부처간 국가·지방간 등 정보 연계 요구, 사무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요구</li> </ul>

### 03. 정책적 시사점

#### ☞ 해외 주요국의 규제혁신 지원정책 특징

-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소기업 규제혁신제도는 법률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부기관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 규제 영향 분석, 규제 관련 피규제자 의견수렴, 규제 자문수행 등의 지원 분야를 포함
  - (규제유연성 분석) 연방기관이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중소기업 대상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국내의 중소기업영향평가법에 해당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신규 규제 제정 시 이해관계자협의체(예시 : SBREFA 패널)와 규제 소관 연방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규제라운드 테이블 등을 통해 피규제자, 전문가의 아이디어 등을 수렴 및 공유
  - (규제예보제) 규제예보제를 통해 피규제자 대상 입법예고된 규제를 사전에 공지하고, 의견수렴 등 소통 채널로 활용
  - (규제자문수행) 영국 PA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대상 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관련 확실하고 맞춤형 자문을 제공
- 다만 현장의 접점에서 규제애로사항의 발굴과 개선 건의는 주로 민간기구인 '상공회의소' 등이 현장 창구 역할을 담당
  - (유럽 산업계 자문 그룹) 유럽 주요기업 CEO로 구성된 산업계 라운드테이블이 EU 정책 의제 설정에 참여하여, 입법 절차를 시작하는 EU위원 대상 정보 제공 및 정책 옵션 제공
  - (미국 상공회의소)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정책결의안을 제출하고, 정부에 제출되거나 계류 중인 입법·규정에 대한 피규제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
  - (일본 경제인 연합회) 국내외 중요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업과 협회 조사를 바탕으로 규제 개혁이 필요한 항목을 작성하여 요구

#### ☞ 국내 규제혁신 추진 방향

-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중소기업 규제혁신 과정에서 그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적극적 의견수렴이 중요하며, 기존 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규제 신설·강화 단계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바람직
  - 특히, 피규제자의 효과적 수렴을 위해서는 규제의 신설 강화 초기 입안 단계부터 최종 확정시까지 중소기업이 규제 입안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마련·확충이 중요
  - 규제 도입 이전에 피규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규제를 설계하는 것이 기존 규제개선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효율성이 높음
    - ⇒ 중진공은 33개 지역본·지부 현장거점을 통해 규제 신설·강화 및 기존 규제의 혁신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정책 당국에 전달하는, 정책과 현장을 잇는 중개자 역할 수행 가능
- (중소기업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세분화하여, ①생애주기별 주요규제(창업, 확장, 퇴출 등) 발굴 ②미래 산업 등 핵심 신산업 규제 혁신 강화, ③불합리한 기존 규제 폐지·완화, ④지원사업 요건기준 합리화,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나누어 관리하고, 개선현황, 결과 등을 윈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 중진공의 중소기업 규제 접수, 건의, 처리현황, 처리결과까지 전 과정을 DB화하여 피규제자 대상에게 공개하는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타기관과 협업하여 데이터를 연계·공유하여 중소기업 현장 규제 혁신 플랫폼으로 확장 가능

- (현장 규제혁신 자문단 구성) 중소기업은 규제 담당부처를 모르거나, 복잡한 법령해석과 건의 절차 등으로 인해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거나, 개선 건의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규제 관련 자문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이 규제관련 조인과 정보를 얻고, 필요시 규제 건의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토록 함  
 ⇨ 피규제자인 중소기업과 규제 담당 부처를 중개하는 자문단을 구축하여 피규제자와 규제자간 소통을 높이고, 기업의 규제이행도 제고

# KOSIME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 Ⅲ.

## 규제혁신 업무 현황 및 성공사례

- 01 규제혁신 업무 현황
- 02 기관 사업 규제 개선
- 03 중소기업 규제 애로 중개

# Ⅲ. 규제혁신 업무 현황 및 성공사례



## 01. 규제혁신 업무 현황

- 중진공의 중소기업 규제혁신 관련 기능과 업무는 ①사업규제 개선, ②중소기업 규제애로 중개 등으로 구분이 가능함

【중진공 규제혁신 관련 기능 및 업무】

구분	사업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애로 중개
법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와 제20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관련 제도	규제입증책임제	중기 옴부즈만
전담부서	기획조정실	규제정책연구실, 기업성장응답센터 33개 지역본·지부
인력	1명	1명
담당규제	기관 사업 관련 규제	중소기업 규제 전체(기관 사업 관련 규제 제외)
주요업무	규제입증위원회의 운영 체규정의 심의·관리 관련 업무	애로사항 정책건의, 규제 완화 등의 중개 기업활동규제 완화 관련 수요 발굴

## 02. 기관 사업 규제 개선(규제입증위원회)

### 도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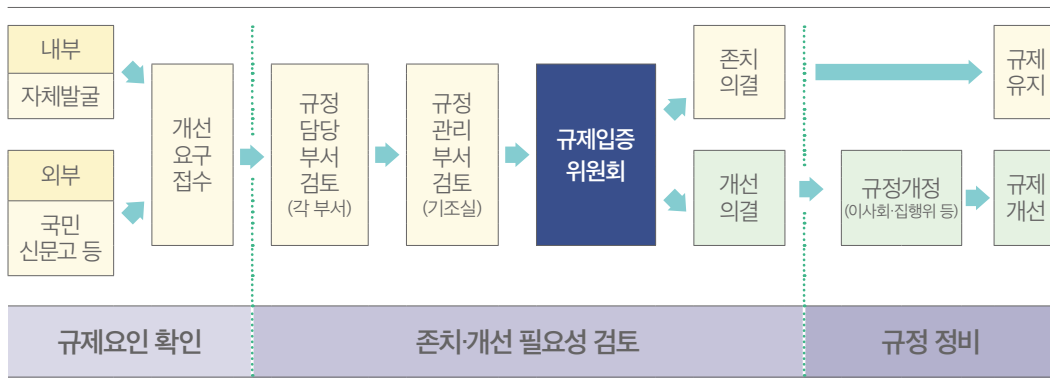
-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와 제20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가 공공기관으로 확대  
-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기존 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해 매년 공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

- '규제 정부인증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이 정부에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토록 강제하는 것으로, 기존에 국민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입증책임을 정부 책임으로 전환
- 정부는 2020년부터 '규제 정부인증책임제'를 전 공공기관의 내부 행정 및 지원사업 분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진공 역시 내부 규정에서 규제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
-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이 집행되는 대국민 접점이라는 점에서 국민 생활과 기업 경영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규정 중 규제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

### 업무 내용 및 운영 프로세스

- 중진공 사업과 관련해 발굴된 규제에 대한 제규정의 심의 및 관리의 역할을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음
-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할 목적으로 지난 2020년 9월에 「규제입증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했으며, '기획조정실'이 규제관리부서로서 규제입증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심의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통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 현재 사업규제 발굴은 주로 부서(규정담당부서)별 검토, 즉 자체발굴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그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1차적으로 규제소관부서가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2차적으로 '기획조정실'이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해당 애로사항을 개선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 사전검토서는 규제 내용이 포함된 규정의 담당부서가 작성하며 '기획조정실'(규제관리부서)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안건이 확정
  - 해당 규제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존치 필요성, 적정성 등을 입증) 규제입증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 결과에 따라 규제소관부서에 해당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권고하고, 권고사항 이행 후에는 그 처리결과를 기획조정실에 제출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중진공「규제입증위원회 운영지침」제9조)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프로세스】



\* 자료: 중진공 내부 자료 (2022)

### ☞ 주요실적

- 규제입증위원회가 구성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57건의 규제를 심의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48건의 규제개선이 이루어짐
- 사업 전반의 규제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①환경규제, ②차별규제, ③기준규제, ④갑을규제, ⑤비용규제, ⑥문서규제, ⑦기타규제로 구분해 정의하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업무는 규제입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음

【규제 요인 발굴 판단 기준】

구분	판단 기준
환경규제	•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규제 여부
차별규제	• 사회적 약자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제 여부
기준규제	• 지원 대상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규제 여부
갑을규제	•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규제 여부
비용규제	•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규제 여부
문서규제	• 이용자에게 과도한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규제 여부
기타규제	• 기타 국민 또는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여부 등

- 현재까지 총 8회 규제입증위원회가 개최하여 발굴된 57건의 규제사항을 심의하였고, 이 중 48건(84.2%)의 개선이 결정됨

【규제입증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구분	위원회			심의 건수	개선			존치		
	개최일	대면	서면		폐지	완화	소계	불수용	장기 검토	소계
1	'20.11.10	1	-	7	-	6	6	1	-	1
2	'21.03.02.	-	1	9	-	8	8	1	-	1
3	'21.04.13.	1	-	9	1	7	8	1	-	1
4	'21.09.14.	1	-	8	-	8	8	-	-	-
5	'21.11.16	-	1	7	-	1	1	6	-	6
6	'22.05.17	1	-	10	-	10	10	-	-	-
7	'22.06.21	-	1	5	-	5	5	-	-	-
8	'22.07.19	-	1	2	-	2	2	-	-	-
계	총 8회	4회	4회	57건 (100%)	1건 (1.7%)	47건 (82.5%)	48건 (84.2%)	9건 (15.8%)	0건	9건 (15.8%)

**주요 성공사례**

-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규제개선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책자금 대출시, 투명경영이행약정 체결대상 기준 완화, '정책자금 신청기업 금융거래확인서 서류제출 전면폐지' 등이 있음
- 투명경영이행약정 체결대상 기준 완화(제2차 규제입증위원회 심의·의결(2021.3.2.)) → 중진공 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요령 개정(2021.3.29.)
- 정책자금 신청기업 금융거래확인서 서류제출 전면폐지(제3차 규제입증위원회 심의·의결(2021.4.13.)) → 중진공 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요령 개정(2021.4.27.)

**【규제입증위원회 운영을 통한 규제개선 우수사례】**

구분	기존	개선	효과
정책자금 대출시, 투명경영이행 약정 체결대상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약정 체결 시, 투명경영이행 약정*대상에 실질 기업주와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모두 포함</li> <li>* 투명경영이행약정: 법인기업 경영자의 연대보증책임을 면제하는 대신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기업주가 아닌 전문경영인에게까지 투명경영이행 약정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소지가 있어, 불합리한 규제요인을 완화하고자 투명경영이행약정 체결대상자를 실질기업주로 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제약 완화 및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 정책에 부응</li> </ul>
정책자금 신청기업 금융거래확인서 서류제출 전면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실물 금융거래확인서 징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는 정책자금 이용 희망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물 금융거래확인서 제출절차를 전면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거래 확인 간소화를 통한 정책자금 신청기업의 서류제출 부담 경감 및 정책자금 이용 편의성 제고</li> <li>* 연간 약 36만건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에 소요되는 약 20억 원의 고객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당 1~3영업일의 업무처리 소요기간 단축</li> </ul>

### 03. 중소기업 규제 애로 중개

#### 추진근거

- 중소기업 규제애로(정책) 중개 업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아래 업무들을 중진공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혁신 관련 업무 내용】

주요 내용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고충처리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영기관(업무기관)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의 개선 건의 및 권고 ③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4조)으로 정하는 아래의 업무 ④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조사·분석 ⑤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와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평가 및 분석 ⑥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와 애로사항 해결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⑦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법규·제도 및 고충처리 사례의 조사·연구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벤처기업 애로사항 건의, 규제 등 중개 업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설치 근거가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업무에 대한 지원과 1차적으로 관련되고, 동시에 현재 중진공이 수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내용들과도 관련
  - 중진공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업을 통해 처리
  - 또한 「중소기업진흥법」 제65조는 중진공을 제63조와 제64조에 따라 설치·구성되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진공이 수행하는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중진공과 협업하여 해결

### 규제발굴 채널

- (지역본·지부 기업성장응답센터)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중진공을 포함한 125개 공공기관에 '기업성장응답센터'가 설치되어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기 위한 전담창구로 활용 중. 중진공은 본사와 자체 현장접점인 33개 지역 본·지부에 2020년 10월부터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임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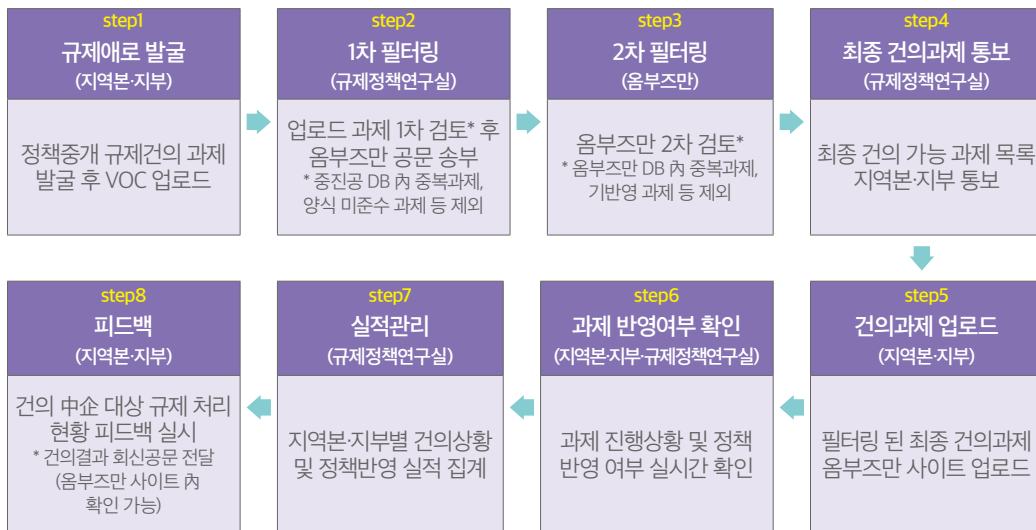
구분	내용
설립연도	2020년
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공사, 강원랜드, 중진공, 시설안전공단 등 125개 공공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li> <li>• 별도조직 신설은 기관재량 사항이나 가급적 부기관장 직속 형태로 센터를 설치하고 관련업무는 전담직원이 담당</li> </ul>
기관장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li> <li>• 공공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 센터장 임명</li> </ul>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등의 경영활동의 제약을 야기하는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전국에 125개 센터</li> </ul>
업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규제혁신</li> <li>• 기업이 제기한 규제·애로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기업애로 혁신</li> </ul>
업무처리과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애로 신고사항 접수 및 1차 검토, 기업현장 의견수렴(간담회 등) 및 센터 건의기업 처리결과 안내</li> <li>•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애로, 국민불편 과제, 단순한 정보안내 사항, 기업건의 요지가 불명확·불투명한 과제 등은 제외</li> </ul>
현장중심 과제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애로 신고기업이 방문하기 용이한 위치(본부 및 지부 민원실 등)에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li> <li>•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규제애로를 신고하는 응답센터페이지를 마련하고 중기 ombudsman 규제애로 신고 페이지와 연계</li> </ul>
규제대안 심층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에서 기업 규제애로 발굴 및 1차 검토하고 중기 ombudsman에 연계 제출하여 심층검토·처리</li> </ul>

- 또한 중진공은 자체 홈페이지에 규제애로를 신고하는 '온라인 응답센터(KOSME 통합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임
- (S.O.S Talk·간담회) 기업성장응답센터 외에도 S.O.S talk, 공공-민간기관들과의 합동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서 규제사항 발굴
  - S.O.S talk에서는 중진공이 직접 운영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며, 중진공과 중소기업 ombudsman이 연 10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규제발굴 추진
- (금융애로센터) 2013년 금감원과 협업하여 설치, 금융관련 규제 발굴 업무 담당

## 업무 프로세스

- 현장거점의 기업성장응답센터, S.O.S Talk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에서 발굴된 규제들을 일련의 필터링 과정을 거친 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개선 건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본·지부에 다시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
  - (규제애로 발굴) 중소벤처기업 관련 애로사항 발굴 후 건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정책중개 전산 입력 시스템(VOC) 내 업로드
  - (1차 필터링) 규제정책연구실에서 VOC에 업로드 된 과제를 1차 검토하고(중복과제, 양식 미 준수 과제 등) 중기부 등과 협의하여 자체 개선 가능한 중진공 사업과제 등을 제외한 뒤 옴부즈만에 송부
  - (2차 필터링) 건의한 과제를 옴부즈만이 2차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규제정책연구실'에 송부
  - (최종 건의과제 통보) 1, 2차 필터링을 통과한 규제발굴 과제 목록을 '규제정책연구실'에서 지역본·지부 담당자 대상에게 통보
  - (건의과제 업로드) 필터링 통과한 과제 대상으로 각 지역본·지부 담당자가 옴부즈만 DB 시스템 내 업로드

### 【정책중개 업무 프로세스】



- 중소기업 금융애로센터의 규제 발굴 및 해소 업무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
  - 접수된 금융애로사항 등을 지역본·지부가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로 송부하고, 동 센터는 자체 접수하거나 지역본·지부로부터 접수된 금융애로사항 등을 직접 상담·해소



**주요실적**

- 2021년 총 408건을 발굴하고 이 중 109건이 정책에 반영(반영률 26.7%)
  - (기업성장응답센터) 2021년 195건 규제 발굴, 이 중 43건이 정책에 반영
  - (S.O.S Talk) 2021년 147건 발굴, 이 중 66건이 정책에 반영

\* S.O.S Talk는 지역별 중소기업의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중진공 합동 현장 간담회로 2021년 15회 개최

**【정책중개 업무 프로세스】**

발굴채널		발굴건수			반영건수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자체	기업성장응답센터	285	276	195	25	36	43
협업	S.O.S talk	151	159	147	46	38	66
	공모전	51	10	16	1	-	-
	금융애로센터 등	66	66	50	-	1	-
합계		553	511	408	72	75	109

**성공사례**

-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발굴된 규제가 정책에 반영된 대표적 사례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급 규정 변경',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신청 제외조건 완화' 등이 있음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한 규제개선 우수사례】**

구분	기존	개선	효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급 규정 변경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신청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 가능(21.10월 고시 개정 → '22년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연도 중 부채비율을 회복한 기업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 가능</li> </ul>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신청 제외조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공급자로 등록된 기업은 혁신바우처사업 신청 제외 조건에 해당(사업 공고)되어 사업 참여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자로 등록된 기업도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공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 한하여 수요기업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참여 조건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제공분야가 다를 경우 수요기업으로 인정하여, 많은 기업이 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li> </ul>

# KOSIME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 IV.

## 중소 규제혁신 동향 및 수요분석

- 01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응 동향
- 02 중소기업 규제혁신 정책 수요
- 03 중소기업 규제혁신 필요 분야 및 지원방안

# IV. 中企 규제혁신 동향 및 수요분석



## 01. 中企 규제혁신 대응 동향

### ☞ 中企 규제혁신 대응 동향조사 실시

- '22년 중소기업 규제혁신 지원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中企 규제 대응현황과 개선 필요 수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함

#### 【中企 규제혁신 대응 동향조사 개요】

조사대상	• 중진공 정책모니터링단 1,000개사(응답률 35.2%)
조사기간	• 2022. 8. 24. ~ 9. 4.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유선, SMS, E-mail 조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5.22%P
조사내용	• 中企 규제 체감도와 대응 현황 • 中企 규제 환경 전망과 개선 필요 규제 • 中企 신산업 규제 애로

\*자료 :KOSME 이슈포커스, 「中企 규제혁신 대응 동향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중진공, 2022)」

- 조사 응답기업은 정책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

\* 정책지원 대상: 비수도권 소재기업, 제조업 영위기업, 소규모기업, 신산업기업 등 지원비중 高

【응답기업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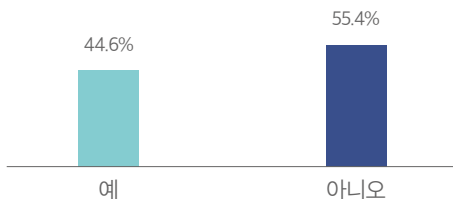
지역	비중(%)	업종	비중(%)	매출액 규모	비중(%)
서울	11.9	금속	19.0	5억 미만	6.0
인천·경기	28.4	기계	21.0	5~10억원	8.0
강원	2.8	화학	9.4	10~50억원	37.2
대전·충청	12.5	전기/전자	9.4	50~100억원	19.6
광주·전북·전남	12.2	섬유	4.8	100~300억원	23.6
대구·경북	15.3	식품	5.7	300억원 이상	5.7
부산·울산·경남	16.2	정보처리	5.4	신산업 기존산업	21.9
제주	0.6	유통/기타	25.3		

### ☞ 中企 규제 체감도와 대응 현황

☞ 응답 中企 44.6%,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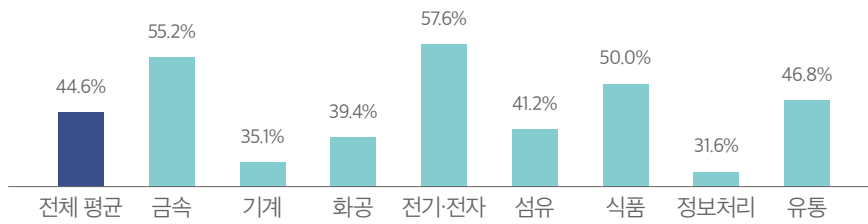
- 응답기업의 10곳 중 4곳 이상(44.6%)은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경험 여부(n=352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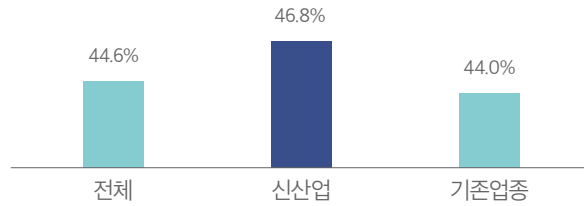
- 업종별로 전기·전자(57.6%), 금속(55.2%), 식품(50.0%)등이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응답이 전체(44.6%)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금속, 전기용품, 식품 등의 업종은 환경·안전 인증 관련 규제 수준이 높아, 애로사항 경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업종별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경험 응답 비중(n=352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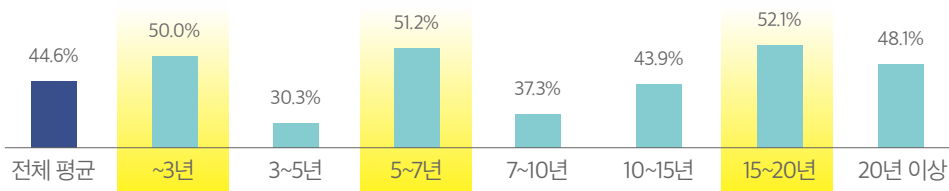
- 신산업 업종의 규제 애로사항 경험 응답 비율(46.8%)은 기존 업종(44.0%) 대비 높은 것으로 파악됨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경험 응답 비중(n=352개사)】



- 업력별로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3년 미만(50.0%), 5~7년 미만(51.2%), 15~20년 미만(52.1%) 기업에서 전체(44.6%)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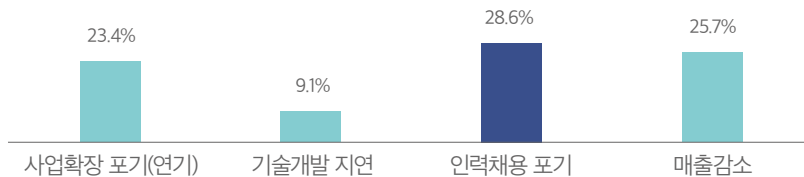
【업력별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경험 응답 비중(n=352개사)】



### 🏠 규제로 인해 경험한 애로사항: 인력 채용 포기(28.6%)

-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으로는 인력 채용 포기(28.6%)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매출감소(25.7%), 사업확장 포기(연기)(23.4%), 기술개발 지연(9.1%) 순으로 나타남

【규제로 인해 경험한 애로사항 응답 비중(n=157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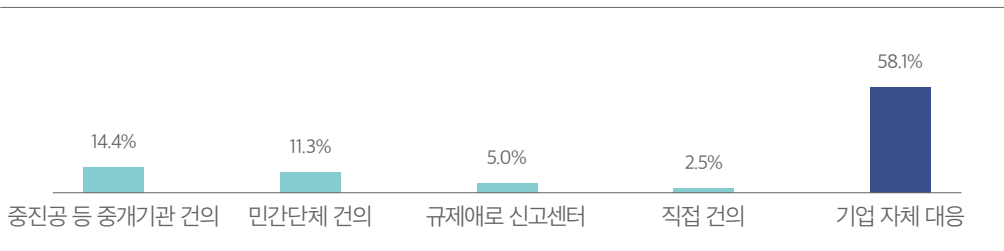
\*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 157개사

- 업종별로 정보처리 업종은 “기술 개발 지연” 응답 비율이 33.3%로 전체 평균(9.1%) 대비 3배 이상 높아,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 애로가 큰 것으로 보임
- 기타 애로사항으로는 종업원 감소, 대출규제, 사업 위축, 투자 및 양산화 지연, 외국인 고용 쿼터, 상장지연, 불필요한 점검 등을 응답함

**📌 규제에 의한 애로사항 해결 : 中企 58.1%, 기업 자체 대응**

- 규제에 의한 애로사항 해결 방법으로는 기업 자체 대응(58.1%)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중진공 등 정부 규제 중개기관을 통한 건의(14.4%), 협회 등 민간단체 등을 통한 건의(11.3%),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243개 지자체, 지방중기청)(5.0%), 규제 담당기관 홈페이지,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한 직접 건의(2.5%) 순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이 규제에 의한 애로사항을 자체 대응한다는 응답이 높아, 적극적인 규제발굴과 기업들이 규제에 의한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 확대 필요

【규제에 의한 애로사항 해결 방법(n=157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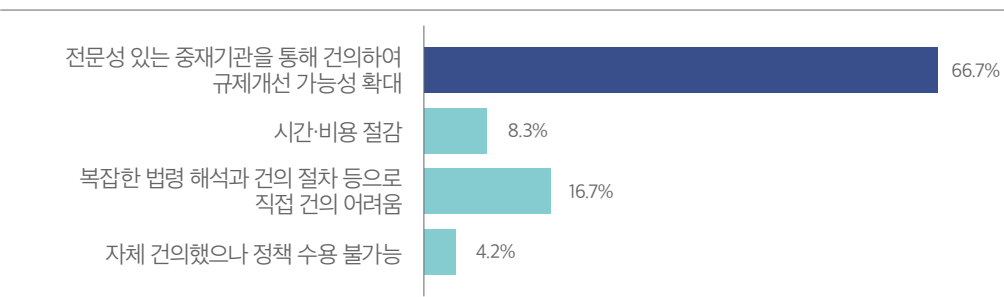


\* 규제에 의해 애로사항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 157개사

**📌 정책 중개기관 건의 사유 : 中企 66.7%, 규제 개선 가능성 확대**

- 정책 중개기관을 통해 건의한 응답자들의 중개기관 활용 사유로는, 전문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건의함으로써 규제 개선 가능성 확대(66.7%)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복잡한 법령 해석과 건의 절차 등으로 직접 건의 어려움(16.7%), 시간과 비용 절감(8.3%), 자체 건의했으나 정책 수용 불가능(4.2%) 순으로 나타남

【정책 중개기관 건의 사유(n=23개사)】



\* 규제에 의한 애로사항을 정책 중개기관을 통해 해결한다고 응답한 기업 23개사

**📌 기업 자체 규제 건의 사유 : 中企 37.8%, 건의결과 피드백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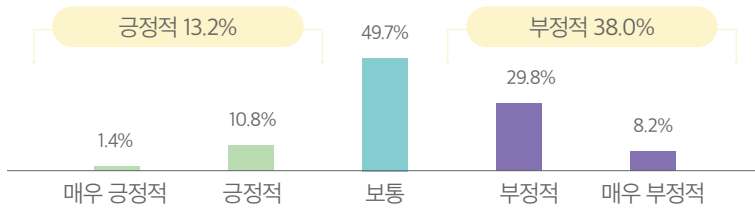
-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규제를 건의하는 이유로는 건의결과에 대한 불충분한 피드백(37.8%)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번거로운 중개기관 건의 절차(30.6%), 건의내용 타기관 비공개 희망(11.2%)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이유로는 방법·경로를 모름, 담당기관을 모름, 불이익 발생 우려 등이 조사됨

## ☰ 중소기업 환경 전망

### 🏠 올해 기업 규제 환경 전망 : 중소기업 38.0%, 부정적이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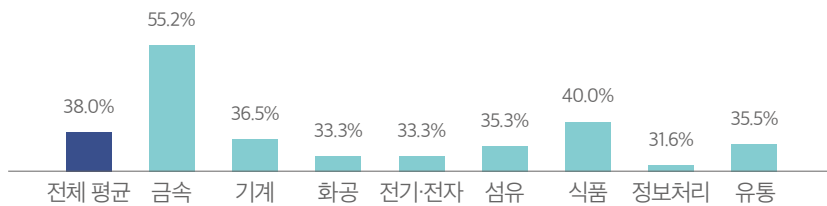
- 응답 중소기업의 38.0%가 올해 규제 환경이 “부정적(매우 부정적(8.2%) + 부정적(29.8%))”일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보통(49.7%)”, “긍정적(12.2%)(매우 긍정적(1.4%) + 긍정적(10.8%))” 순으로 응답

【올해 기업 규제 환경 전망(n=352개사)】



- 매출액별로 5억 미만 기업과 업력 3년 미만 기업의 “부정적” 응답 비율은 각각 57.1%, 50.0%로, 전체 대비(38.0%) 상대적으로 높아, 창업초기 소규모 기업들이 기업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업종별로 기업 규제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응답 비율은 금속(55.2%), 식품(40.0%), 기계(36.5%), 유통(35.5%), 섬유(35.3%), 전기·전자·화학(33.3%), 정보처리(31.6%) 순으로 나타나, 금속·식품 업종은 전체 평균(38.0%)보다 기업 규제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했고, 전기·전자·화학·정보처리 업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던 금속, 식품 업종은 환경·안전 인증 관련 규제 수준이 높아 규제환경 전망 또한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됨

【업종별 규제 환경 전망 부정 응답 비율(n=352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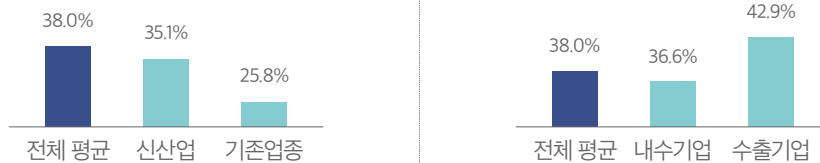


- 신산업 분야 기업(35.1%)\*들이 기존 업종 기업(25.8%)보다, 수출기업(42.9%)이 내수기업(36.6%)보다 기업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함. 이는 규제자유특구 등 신산업 분야와 수출기업의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신산업 분야 기업 :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 무인선박 등),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이동수단,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신소재, ICT 융합(IoT·빅데이터, AI, VR·AR, 클라우드, 지능로봇), 신서비스(핀테크, O2O), 바이오·의료(의약품·바이오, 의료기기·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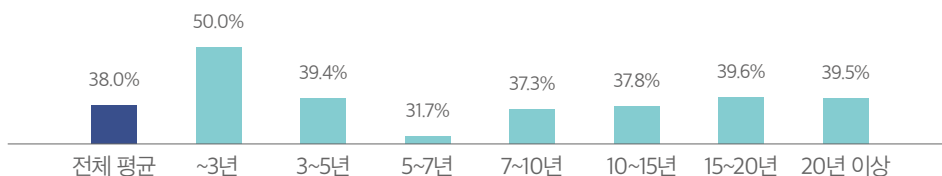


【신산업·기존업종 규제 환경 전망 부정 응답 비율(n=352개사)】 【수출·내수기업 규제 환경 전망 부정 응답 비율(n=352개사)】



- 업력별로 “부정적 전망” 응답 비중은 3년 미만(50.0%)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업력 7년 이상 기업 (38.5%)이 업력 7년 미만 기업(36.6%)보다 기업환경을 더 부정적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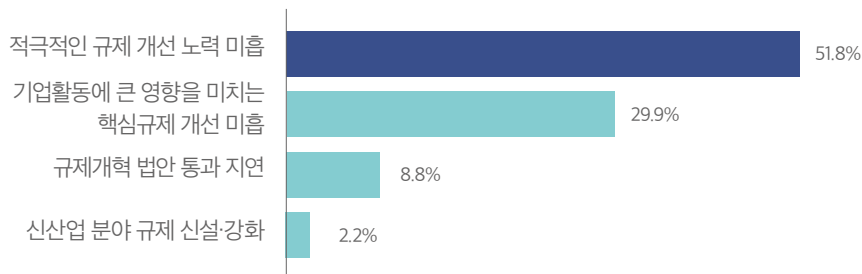
【업력별 규제 환경 전망 부정 응답 비율(n=352개사)】



🏠 기업 규제 환경 부정적 전망 사유 : 중소기업 51.8%,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 미흡

- 기업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사유로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 미흡(51.8%)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규제 개선 미흡(29.9%), 규제개혁 법안 통과 지연(8.8%), 신산업 분야 규제 신설·강화(2.2%) 순으로 응답함
- 기타 사유로는 유연성 없는 노동시장,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것, 환경 문제에 따른 지속적인 규제 증가 등임

【기업 규제 환경 부정적 전망 사유 응답 비율(n=134개사)】



\* 기업 규제 환경에 대해 매우 부정적, 부정적으로 응답한 134개사

## 02. 中企 규제혁신 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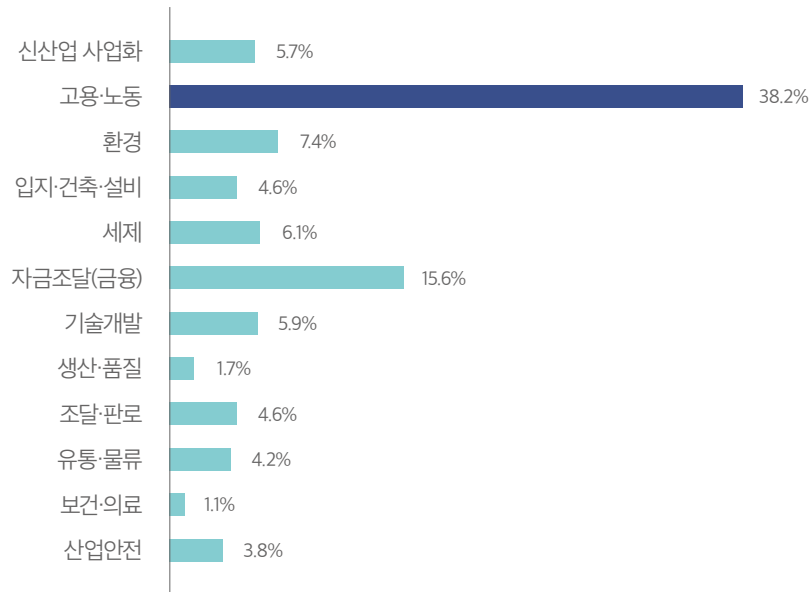
### ☞ 中企 개선 필요 규제 및 정책 수요 분석

(자료: KOSME 이슈포커스, 「中企 규제혁신 대응 동향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중진공, 2022)」)

#### 📌 가장 부담이 큰 규제분야: 中企 38.2%, 고용·노동

- 기업 활동에서 가장 부담이 큰 규제분야로는 고용·노동(38.2%)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자금조달(금융)(15.6%), 환경(7.4%), 세제(6.1%), 기술개발(인증, 특허)(5.9%), 신산업 사업화(5.7%), 입지·건축·설비, 조달·판로(각 4.6%), 유통·물류(4.2%), 산업안전(3.8%), 생산·품질(1.7%), 보건·의료(1.1%) 순으로 나타남

【가장 부담이 큰 규제 응답 비율(n=352개사)】



- 종업원 수가 많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고용·노동을 가장 부담이 높은 규제로 보았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자금조달(금융)을 가장 높은 규제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정보처리산업의 신산업 사업화 부문 규제(42.9%)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응답하여, 신규 사업 기회 창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금속과 화학업종의 “환경” 응답 비중이 각각 15.9%, 10.3%로 전체 평균(7.4%) 대비 높아, 상대적으로 환경 부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식품과 유통 업종의 “자금조달(금융)” 응답 비중이 각각 29.2%, 22.8%로 전체 평균(15.6%) 대비 높아, 상대적으로 금융 부문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개선이 필요한 규제 : 금융 지원 조건 완화,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

- 기업활동에 있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는 금융지원 조건 완화(42.4%)와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 강화(17.5%)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류제출·절차 간소화 등 불편 해소(9.8%), 조달·입찰 등 참여기준, 절차 등 완화(9.1%), 건축·설비 규제 합리화(8.2%), 수수료·사용료 부담 완화(5.3%), 인증·특허·지식재산 규제애로(4.8%), 기타(2.9%) 순으로 조사됨
- 기타 의견으로 고용계약시 업종별 자율성 제공, 근로기준법, 노동환경 등이 조사됨
- 업종별로 기계·화공·정보처리 업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 강화 응답비중이 각각 25.6/28.3/27.3%로 전체 평균(17.5%)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신제품 기술개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금속·식품·유통 업종의 금융지원 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 응답 비중이(51.3/70.0/56.9%) 전체(42.4%) 대비 높았으며, 화공은 건축·설비 규제 합리화 응답 비중(15.2%)이 전체(8.2%)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업종별 개선 필요 규제 응답 비율(n=352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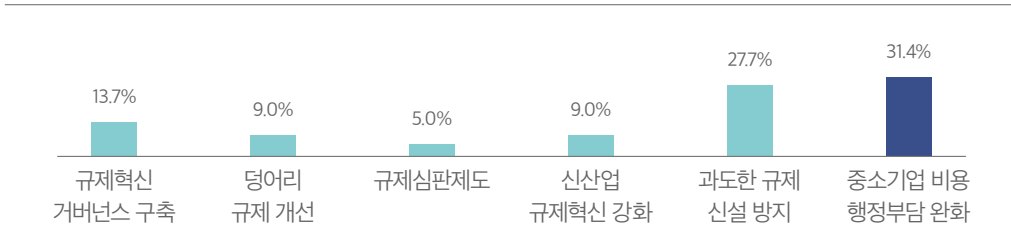
단위 : 전체 응답, %

구분	사례 수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	인증·특허·지식재산 규제애로	건축·설비 규제 합리화	조달·입찰 참여기준, 절차 완화	금융지원 조건 완화·지원확대	수수료·사용료 부담 완화	서류제출·절차간소화 불편해소	기타	
전체	352	17.5	4.8	8.2	9.1	42.4	5.3	9.8	2.9	
업종	금속	67	13.2	1.3	10.5	6.6	51.3	3.9	9.2	3.9
	기계	74	25.6	7.3	6.1	9.8	37.8	0.0	11.0	2.4
	화공	33	28.3	8.7	15.2	4.3	26.1	4.3	8.7	4.3
	전기·전자	33	20.0	11.1	8.9	13.3	31.1	4.4	8.9	2.2
	섬유	17	13.6	4.5	4.5	13.6	22.7	18.2	13.6	9.1
	식품	20	10.0	0.0	15.0	0.0	70.0	0.0	5.0	0.0
	정보처리	19	27.3	0.0	0.0	13.6	36.4	13.6	9.1	0.0
	유통	62	8.3	2.8	6.9	8.3	56.9	8.3	6.9	1.4
	기타	27	9.4	3.1	3.1	15.6	40.6	6.3	18.8	3.1
신산업 여부	신산업	77	25.3	6.6	12.1	8.8	35.2	2.2	8.8	1.1
	기존산업	275	15.3	4.3	7.1	9.2	44.5	6.1	10.1	3.4

📌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 : 中企 31.4%, 중소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

-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규제혁신 거버넌스 구축(13.7%), 덩어리 규제 개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강화(각 9.0%), 규제심판제도(5.0%) 순으로 나타남

【규제혁신 필요 대책(n=352개사)】



- 업종별로 기계·화공·섬유 업종은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33.3/28.2/27.3%)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타업종과 차이를 보임
  - 화공 업종은 규제심판제도 응답 비중(12.8%)이 전체 평균(5.0%) 대비 2배 이상 높았고, 정보처리 업종은 신산업 규제혁신 강화 응답 비중(20.0%)이 전체(9.0%) 대비 2배 이상 높아, 해당 분야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임
- 신산업 기업도 규제혁신을 위한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신산업 규제혁신 강화보다 중소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기업 현장 규제의 적극적인 발굴·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필요

【업종별 규제혁신 필요 대책 응답(n=352개사)】

단위 : 전체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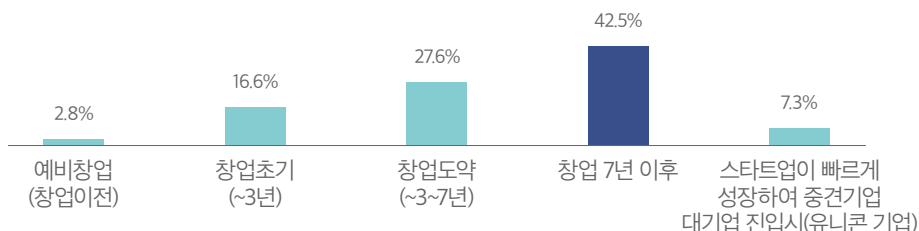
구분	사 례 수	규제혁신 거버넌스 구축	덩어리 규제 개선	규제심판 제도	신산업 규제혁신 강화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	중소기업 비용· 행정부담 완화	기타	
전체	352	13.7	9.0	5.0	9.0	27.7	31.4	4.2	
업종	금속	67	13.2	17.6	4.4	5.9	16.2	33.8	8.8
	기계	74	13.3	6.7	1.3	8.0	33.3	30.7	6.7
	화공	33	17.9	2.6	12.8	12.8	28.2	23.1	2.6
	전기·전자	33	18.4	15.8	5.3	10.5	18.4	31.6	0.0
	섬유	17	9.1	9.1	4.5	13.6	27.3	22.7	13.6
	식품	20	13.6	13.6	4.5	0.0	31.8	36.4	0.0
	정보처리	19	5.0	0.0	10.0	20.0	25.0	40.0	0.0
	유통	62	11.1	3.2	1.6	7.9	33.3	41.3	1.6
기타	27	18.8	9.4	9.4	9.4	37.5	15.6	0.0	
신산업 여부	신산업	77	16.5	7.1	3.5	15.3	21.2	31.8	4.7
	기존산업	275	12.9	9.5	5.4	7.1	29.6	31.3	4.1

### 📌 규제로 인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성장단계 : 창업기업 단계, 창업 7년 이후

- 규제로 인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성장 단계는 창업기업 단계(~7년)(44.2%)\*와 창업 7년 이후(42.5%)로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중견기업·대기업 진입시(유니콘 기업)(7.3%), 예비창업(창업이전)(2.8%) 순으로 나타남

\*창업기업 단계 : 창업초기(~3년)(16.6%) + 창업도약(3~7년)(27.6%) = 44.2%

【규제로 인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성장단계(n=352개사)】



- 창업 3년 이후 데스밸리 단계와 창업 7년 이상 단계에서 규제로 인해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 초기 기업뿐만 아니라, 창업 7년 이후 성장·성숙기 기업 대상 규제 혁신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필요

### 📌 규제로 인한 투자계획 지연·축소·포기 여부 : 中企 58.2%

- 응답 中企의 절반 이상(58.2%)은 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을 지연·축소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매출액이 높을수록 규제로 인한 투자계획 지연·축소·포기 경험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 투자계획 지연·축소·포기경험비율(%): (5억 미만)52.4, (10억 미만)53.6, (50억 미만)54.2, (100억 미만)56.5, (300억 미만)68.7, (300억 이상)60
- 업종별로 투자계획 지연·축소·포기 경험 응답비율은 식품(65.0%), 섬유(64.7%), 금속(61.2%), 유통(59.7%), 기계(58.1%), 화공(51.5%), 전기·전자(48.5%), 정보처리(47.4%) 순으로 나타남
  - 식품, 섬유, 금속 업종이 규제로 인한 투자계획 지연·축소·포기 등의 애로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비수도권 기업(59.5%)이 수도권 기업(56.3%) 대비 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을 지연·축소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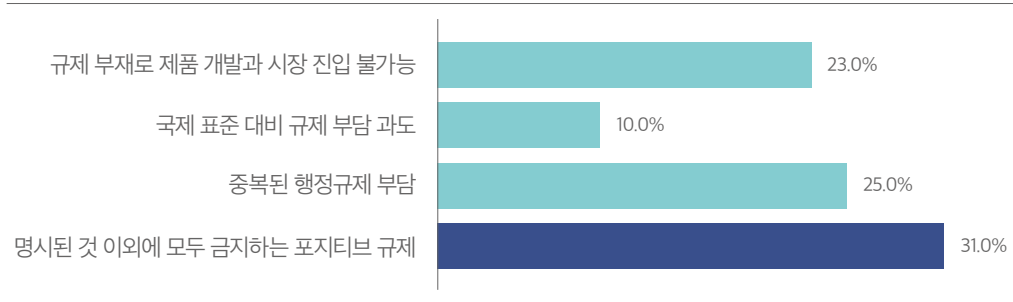
### 📌 규제로 인한 신규사업 진출 어려움 경험 여부 : 中企 55.1%

- 응답 中企의 절반 이상(55.1%)은 규제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 규제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식품(75.0%), 섬유(64.7%), 화공(57.6%), 유통(54.8%), 전기·전자(54.5%), 기계(52.7%), 금속(50.7%), 정보처리(42.1%) 순으로 나타나, 식품·섬유·화공 업종이 전체 평균(55.1%) 대비 규제로 인한 신규사업 진출 애로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 업력별로 업력 7년 이상 기업의 신규사업 진출 어려움 경험 여부 응답 비율(57.0%)이 업력 7년 미만(48.8%) 기업 대비 높아, 창업 단계 기업뿐만 아니라, 성장·성숙단계 기업의 규제개선 강화 필요
- 비수도권 기업(57.6%)이 수도권 기업(51.4%) 대비 규제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 신규사업 진출 시 체감하는 규제수준은 지방기업이 수도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됨

🏠 **신규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포지티브 규제(31.0%)**

- 신규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명시된 것 이외에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31.0%)”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중복된 행정규제 부담(25.0%), 규제 부재로 인해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 불가능(23.0%), 국제 표준 대비 규제 부담이 과도(10.0%) 순으로 응답함

【신규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n=194개사)\*】



\* 규제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94개사

- 기타 의견으로는 환경규제(산업안전보건법),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 규제로 인한 지연으로 사업계획 차질 등이 있었음

🏠 **규제개선이 가장 시급한 미래 신산업 분야: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신소재(29.9%)**

- 규제개선이 가장 시급한 미래 신산업 분야로는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신소재 응답 비중(29.9%)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ICT 융합(IoT·빅데이터, AI, VR·AR, 클라우드, 지능로봇)(14.8%),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이동수단(14.2%), 바이오·의료(의약품·바이오, 의료기기·서비스)(12.6%),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등)(8.7%), 신서비스(핀테크, O2O)(5.6%)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

### 【규제혁신 관련 기타 의견】

구분	주요내용
규제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필요한 행정절차 완화</li> <li>•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변경 필요</li> <li>• 신규 규제 제정시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 제공</li> <li>• 기업의 규모와 현실에 맞는 유연한 규제 적용 필요</li> </ul>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관련 대출 규제 완화, 세제 완화</li> <li>• 업력 7년 이상 기업 지원 강화</li> <li>• 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li> <li>• 기업 상장 심사단계에서 소액주주 전원의 보호예수동의서 제출 필요. 이민자, 실종자, 사망자도 제출 필수, 예외조항 마련 필요</li> </ul>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적용기준 및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규제 완화 필요</li> <li>• 조선업종 인력 부족 심각. 신규 인력 채용시 기숙사 지원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기업 부담 심화</li> <li>• 내국인 현장인력 수급 애로 발생,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완화, 외국인 기능인력 기한 연장, 기업 자율 연수인력 확보 필요</li> </ul>
조달·판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실적 인정 범위 확대</li> <li>• 신규 개발 제품 KC 인증, 성능인증 비용 지원 또는 인증 비용 절감</li> <li>• 조달청 입찰 참가 시 신용평가서 징구 시점 개선 (기존) 입찰 참가 시 → (개선) 적격 검사기간 내 제출</li> <li>• 조달청 입찰 인력 평가시 자격증 보유자 뿐만 아니라, 박사, 석사 학위소지자도 동일한 자격 부여 검토 요청</li> <li>• 나라장터 입찰 참가 시 품질관련 인증(KS, 조달품질보증단체표준 등) 통합 또는 간소화 검토</li> <li>• 일부 조달품질보증은 특정협회를 통해서만 컨설팅 가능하여, 부담이 큼</li> <li>•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조달 등록단가가 연동될 수 있는 제도 마련</li> </ul>
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산업 분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li> <li>• 로봇 배터리 인증 규격 마련 필요</li> </ul>

### 03. 中企 규제혁신 필요 분야 및 지원 방안

#### ☞ 규제혁신 필요 분야

- 중소기업 규제혁신 동향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규제는 고용·노동과 자금조달(금융)분야**로 나타나, **해당 분야 규제혁신 강화 필요**
  - 중소기업 인력수급은 인력 채용률은 하락하고, 인력 부족률은 상승하여 악화되고 있는 상황
    - \*중소기업(300인 미만) 인력채용률(고용부, %): ('17)86.8→('18)87.1→('19)87.2→('20)88.2→('21)84.0
    - \*중소기업(300인 미만) 인력부족률(고용부, %): ('17)2.6→('18)2.5→('19)2.2→('20)2.1→('21)3.1
  - 중소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32.6만명)의 82.0%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나라 고용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 분야 규제 혁신은 필수적임
- 또한, 업종별로 기업 규제환경 전망과 부담을 느끼는 규제에도 차이가 있어, **업종별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적극적·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노력 필요
  - 전기·전자, 화학, 정보처리 업종은 규제환경을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전망했으며, 금속, 식품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전망
  - 전반적으로 고용·노동 분야 규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정보처리·신사업 사업화 규제, 금속, 화학 업종은 환경규제, 식품·유통 업종은 자금조달(금융)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큰 애로를 겪고 있음
-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는 응답 중소기업이 **금융지원 조건 완화(42.4%),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 강화(17.5%), 서류제출·절차 간소화(9.8%), 조달·입찰 등 참여기준, 절차 등 완화(9.1%), 건축·설비 규제 합리화(8.2%)** 등을 꼽아, **개선이 시급한 규제분야를 적극적 발굴·우선적으로 개선 추진** 필요
  -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의 요건과 기준 합리화, 절차 간소화 등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원하는 현장애로 해소 강화 필요
- 규제혁신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신산업 분야**가 기존산업 대비, **업력 7년 이상** 기업이 7년 미만 기업 대비 규제 애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5.1%)은 시장보다 더딘 규제개선으로 인해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나타나, 규제가 시장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창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신산업 분야\* 대상 규제샌드박스**와 **네거티브 규제 등의 확대** 지원 필요
    - \*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 무인선박 등),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이동수단,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신소재, ICT 융합(IoT·빅데이터, AI, VR·AR, 클라우드, 지능로봇), 신서비스(핀테크, O2O), 바이오·의료(의약품·바이오, 의료기기·서비스) 등
  - 또한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업력 7년 이상 성장기·성숙기 기업의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규제혁신 지원 방안

- 규제혁신을 위한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를 가장 많이 응답하여, 이러한 정책적 수요를 바탕으로, **현장규제 혁신**과 **과도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여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 필요
  - 중소기업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지원 요건이나 기준도 규제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경영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준 합리화, 비용·시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규제 검토** 필요
  - 또한 **신규 규제 제정** 시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의 규모와 현실에 맞는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신산업 기업도 규제혁신을 위한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신산업 규제혁신 강화보다 중소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기업 현장 규제의 적극적인 발굴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필요

# KOSIME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V.

## 결론 - 시사점

01 중진공 中企 규제혁신 지원 방향성 모색

## V. 결론 \_ 시사점



- ✔ **중소 규제발굴·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책 반영률 제고**
  - (규제발굴) 중소기업 현장 규제발굴 기능 강화
  - (규제관리) 규제 채널을 통해 수집된 규제사항 DB화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 (규제반영) 현장규제 심층분석과 정책연구 수행으로 정책 반영 확대
- ✔ **기관 규제혁신 업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대내외 협업 체계 구축**
  - 기관 규제혁신 업무를 기획·조정·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금감원·신한은행 등 민간협업을 통한 금융규제 발굴 기능 강화
- ✔ **기관 사업과 규제혁신 업무 연계 강화**
  - 지역혁신성장프로젝트를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개선
- ✔ **(중장기) 중소기업 규제혁신 플랫폼(가칭 : 규제 데이터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 01 중진공 중소기업 규제혁신 지원 방향성 모색

#### ■ 중소기업 규제 발굴·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책 반영률 제고

##### ☞ (규제발굴) 중소기업 현장 규제 발굴 기능 강화

- (핵심규제) 현장거점을 통해 신고된 규제·애로사항뿐만 아니라, 지원기업 동향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규제(예시 : 신산업 규제 애로, 탄소중립 대응 규제 등)를 선제적으로 발굴 후 우선적으로 개선·건의하여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
- (현장규제) 피규제자를 세분화하여(창업기업, 신산업 진출 기업, 수출기업 등) 관련 사업 수혜기업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협의된 개선방안은 정책 당국에 건의

\* 창업기업 애로 발굴(창업자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수혜기업 조사), 신산업 진출 기업 애로 발굴(사업전환자금 수혜기업 조사), 수출기업(수출바우처, 온라인수출지원 참여 기업 조사)

**☞ (규제관리) 규제혁신 관리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 다양한 규제 신고 채널을 통해 수집된 규제사항을 DB화하여 축적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기업성장응답센터, 'S.O.S Talk', 간담회 등 온·오프라인채널을 통해 접수된 규제·애로사항, 진행현황, 개선결과, 사후관리(피드백 제공) 내용 등을 DB화한 규제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 \* 中企 규제관리시스템 구축 후 규제 신고·건의내용(애로사항, 관련부처, 개선방안), 진행상황, 개선결과 등을 DB화하고, 기관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업무효율화

**☞ (규제반영) 현장 규제 심층분석과 정책연구 수행으로 정책반영 확대**

-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수된 규제건의 사항을 분석하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 마련 필요
  - (기존)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수집 후 규제현황·문제점, 개선방안(담당부처, 법률 포함) 등을 작성하여 중소기업 ombudsman에 전달하는 역할 담당
  - (개선) 발굴된 규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분석을 수행하고, 정책 반영이 되지 않는 미해결 규제들은 DB화하여 심층분석과 정책연구를 통해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

**【정책중개 업무 프로세스 개선】**

AS-IS		TO-BE	
애로사항 전달	규제 문제점, 개선방안 작성 후 ombudsman 전달	유형별 분류 후 애로사항 전달	발굴 규제 유형별 분류 후 ①개선방안·문제점 ombudsman 전달 ②개선 필요성·개선방안 등 심층분석 및 정책연구 수행
결과	규제 개선 적용	결과·활용	규제 개선, 정책 심층연구 과제
		사후관리	미해결 규제 DB화 향후 개선 논리 개발

## ■ 기관 규제혁신 업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대·내외 협업 체계 구축

### ☞ 기관 규제혁신 업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규제정책연구실’은 지역본·지부를 통해 중소기업 규제 발굴 후 옴부즈만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중개 기능, ‘기획조정실’은 증진공 사업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지역산업성장처’는 지역산업성장프로젝트 참가업체의 규제 애로 발굴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
  - \*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시 지자체와 불합리한 규제 공동 발굴·개선 업무 추진
- 현재 규제혁신정책실을 확대 개편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규제 관련 업무를 기획·조정·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검토
  - 현재 ‘규제정책연구실’내에 (가칭)규제혁신팀과 (가칭)조사연구팀을 신설·운영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각 업무 분야가 상호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증진공 규제혁신 업무 효율화(안)】

부서	AS-IS	부서	TO-BE
기획 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제규정 심의·관리</li> <li>• 규제 입증위원회 운영</li> </ul>	기획 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제규정 심의·관리</li> <li>• 규제 입증위원회 운영</li> </ul>
규제 정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굴된 규제 필터링</li> <li>• 규제발굴채널 운영 지원 (기업성장응답센터, S.O.S Talk, 금융애로상담센터 등)</li> <li>• 옴부즈만 중개</li> <li>• 정책연구</li> <li>• 동향분석·이슈포커스</li> <li>• 뉴스레터</li> <li>• 아이디어 공모전</li> <li>• 연구용역 관리</li> <li>• 학·협회 지원</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규제 정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굴된 규제 필터링</li> <li>• 규제발굴채널 운영 지원 (기업성장응답센터, S.O.S Talk, 금융애로상담센터 등)</li> <li>• 옴부즈만 중개 및 <b>정책 건의</b></li> <li>• <b>규제 심층분석 및 정책연구</b></li> <li>• <b>규제 영향분석</b></li> </ul>
		조사 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연구</li> <li>• 동향분석·이슈포커스</li> <li>• 뉴스레터·아이디어 공모전</li> <li>• 연구용역 관리</li> <li>• 학·협회 지원</li> </ul>

- ‘규제혁신팀’은 지역본·지부, S.O.S talk, 기업성장응답센터, 국민신문고 등 각종 채널을 통해 내외부 규제 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접수, 수집, 발굴하는 기능을 수행
- 내부 규제개선 필요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개선하고, 외부규제개선 필요사항은 심층 분석하여 옴부즈만에 대한 중개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 자체 규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단기간에 개선조치가 가능한 ‘일반규제’와, 중장기적인 개선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한 ‘핵심규제’로 규제의 성격을 구분하고, 이들 규제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관리
- 실행가능성이 있는 규제개선 추진전략을 마련해 옴부즈만이나 중기부 등에 건의하는 동시에 해당 규제의 대안 정책 및 법제도 개선을 제시하는 프로세스를 마련

- 또한, 규제 애로사항 검토를 통해 사업화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관 내부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외부규제 중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으로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규제혁신업무 추진체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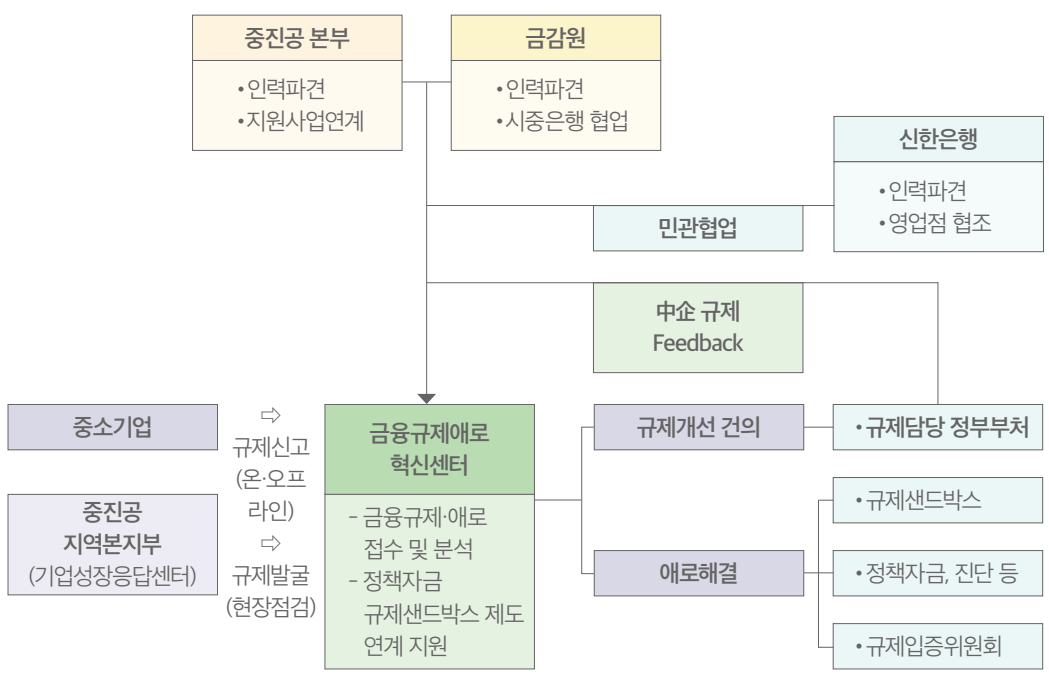


민간 협업을 통한 금융 규제 발굴 기능 강화

- 기존 금융규제 발굴 인프라(기업금융애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금융 규제 개선 성과 제고
  - 공공분야(중진공·금감원) 및 민간(신한은행)과 기업금융애로센터를 공동 운영하여 중소기업 금융규제 애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 중진공-금감원-신한銀에서 각 1인 이상 전문관을 센터로 파견(인사교류 등)하여 금융규제애로 발굴 및 정책건의 기능 강화

\* (기존) 금감원 1인 파견 → (확대) 중진공·금감원·신한은행 총 3인 파견

【중소기업 금융규제애로 혁신센터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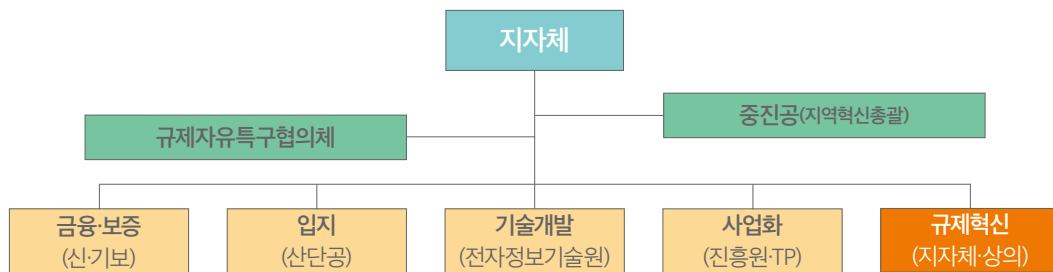


## ■ 기관 사업과 규제혁신 업무 연계 강화

### ☞ 지역혁신성장프로젝트를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 규제 애로 발굴·개선

-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및 주력산업 중소기업의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현장거점별로 구축된 지역혁신성장프로젝트 협업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
- 지역별 협업 거버넌스에 규제혁신 분과를 추가하거나, 규제자유특구 중소기업의 규제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성과 창출
- \* 지자체, 지역 내 연구기관, 혁신 지원기관(경제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예: 경북 규제자유특구 케어 프로그램,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육성을 통한 전북 지역산업 혁신 선도)

#### 【경북 지역 주력산업 혁신성장 협업 추진체계(예시)】



참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도에서 총괄 운영, 중진공은 지역혁신 지원 총괄을 담당</li> <li>- 지역 내 연구기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참여</li> </ul>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혁신 지원 총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li> <li>• (금융·보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li> <li>• (입지) 산단공</li> <li>• (기술개발) 구미전자정보기술원</li> <li>• (사업화) 경북경제진흥원 경북TP, 포항TP</li> <li>• (규제혁신) 지자체, 지역의 등</li> </ul>

\* 현재 경북 지역성장 협업 추진체계에서 규제혁신 분과 추가

## ■ (중장기) 중소기업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경북대 박선주 교수)

### ☞ 중소기업 현장 규제혁신 통합 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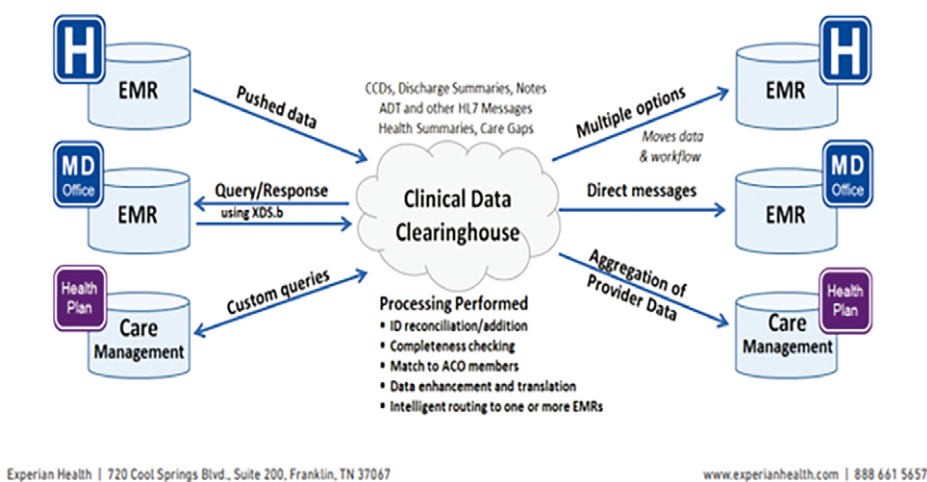
- 현재 기업성장응답센터와 민원불편신고를 통해 현장에서 접수한 규제 애로사항을 중소기업 현장 규제개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자체적인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고려 가능
- 즉, 중진공에서 자체 발굴한 규제 애로사항 및 개선 아이디어를 자료(source), 관련 규제법령, 발굴·접수 시점, 중소기업 생애주기, 소관 부처, 건의 통로(옴부즈만, 부처, 국조실 등), 개선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으로 누구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단기적으로는 자체 발굴 사항 위주로 DB를 구축하며, 개선사례가 쌓일수록 통합DB를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산업분야 협단체, 규제 소관부처 등과 연동·연계하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현 가능



### 중소기업 규제 관련 데이터 클리어링 하우스(Data Clearing House) 기능 수행

- 중소기업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정보를 플랫폼에 통합하여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단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전 과정에 있어서 수요자와 공급자, 피규제자와 규제자 간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강화하는 역할 수행 가능
- 벤치마킹 사례로는 의료분야 데이터 클리어링 하우스, EU의 디지털 분야 법 집행을 위한 클리어링 하우스(안)(clearing house) 등을 들 수 있음
- 민간건강보험이 발달한 국가의 의료분야에서는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푸쉬 데이터가 들어오고, 의료보험사의 요청을 받아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병원이나 의사에게도 정보를 전달하는 등 정보의 유·출입이 이루어지며, 데이터 클리어링하우스에서는 정보를 단지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처리 서비스를 제공

#### 【Clinical Data Clearinghouse】



- 위의 사례에서는 정보 자체가 비배제적 속성을 가지고 민간부문의 이윤창출의 자원으로 활용되어 굳이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클리어링 하우스가 상업 목적으로 형성
- 특히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경우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기능이 제약적이고, 규제혁신 관련 정보의 상업적 가치가 부족하여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중진공에서 협업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데이터클리어링하우스의 구축과 운영의 기능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어, 중진공은 중소기업과 접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소관 부처와의 접점을 통해 데이터의 유·출입을 통합하고, 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중소기업 규제 데이터 클리어링 하우스 관제센터(가칭)'를 운영할 수 있음. 이 센터는 반드시 실물 사무실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가상센터 형태의 데이터 공유 플랫폼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중진공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 협업을 통해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물론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중진공 내부에서 지원사업 관련 규제 애로사항 관련 데이터를 클리어링 하우스 형태로 시범운영한 후, 중장기적으로 협업시스템 구축 가능

# KOSIME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 VI.

## 정책 제언 - 중소 규제혁신 정책 방향 제언

- 01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 \_ 김도훈 서강대 초빙교수(前 산업연구원장)
- 02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향 \_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
- 03 중소기업 규제혁신 정책방향 \_ 박선주 경북대학교 교수



##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

김도훈 서강대 초빙교수(前 산업연구원장)



### 기업활동 유연성 제고·규제 품질 제고· 공정경쟁 기회 제고 등을 위한 中企 규제 개선 중점 추진

#### ✔ 기존 규제혁신 제도적 장치의 개선

- ①규제 샌드박스 제도 확대(바이오 기술), ②규제차등화 제도의 개선,  
③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확충, ④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규제개선과 中企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품질 개선 중점 추진 필요

#### ✔ 中企 규제혁신을 위한 미래 전향적인 제언

- ①中企 규제혁신 전담 인력풀 구축 후 개별 中企 규제개선 문제 자문과  
규제 이슈 대응, ②중진공 규제혁신 기능·전문인력 확충, ③전문성이 커가는  
분야대상 규제 샌드박스 확대
- 규제를 자주 완화·변화하는 것보다 정해진 규제를 일관성 있게 적용 필요  
⇒ 규제설계 단계부터 이해당사자들과 의견 청취 과정 필요,  
中企 규제 순응부담 완화

## 제언 배경 - 중소기업 규제혁신에 대한 기본 시각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쉽게 측정되는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라는 시각에서 보면(즉, 부가가치 창출이나 수출 등에서의 점유율)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그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고용 면에서의 기여도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하고, 나아가 전체 산업구조 면에서 보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역할을 - 부품·소재의 공급, 서비스의 공급,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등의 역할 - 담당함으로써 측정되는 기여도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 정부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확충해 왔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을 담당하도록 해 왔으며, 최근에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중소벤처기업의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를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중소벤처기업 진흥 정책을 국정의 높은 수준에서 추진하게 하는 길도 열었다.
- 또한, 중소기업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완화, 개혁, 혁신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이 까다롭고 과중한 규제로 인해 창업, 생산, 수출, 판매 등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는 시각 하에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혁신 정책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배려는 빠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이런 종합적인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가지는 불리한 여건(전문인력의 부족, 사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한 규제순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조치들도 도입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제도적으로는 규제개혁 신문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기업 규모를 감안한 규제 차등화 제도 등을 도입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규제순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고,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규제부담을 비롯한 각종 애로를 직접 현장에서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그 역할을 강화해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과 벤처기업(혹은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규제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고 있고, 오히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신산업·신기술의 등장으로 사업기회는 더욱 열려감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운신의 폭은 좁아진다고 느끼는 것 같다.

## 중소 규제혁신 노력 지속 불구, 중소기업 경제활동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들을 배려한다는 규제혁신 노력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벤처기업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경제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 첫째, 우리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계속 보호·지원의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사업을 키워가고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방향에서 규제혁신이 추진되어 왔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소규모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과 같이 분명히 그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기업활동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해 가는 길을 열어주는 데에도 정책의 중점이 옮겨져야 할 것이다. 규제혁신이 목적하는 바가 중소벤처기업의 경제활동의 활성화라면, 더욱 이러한 관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둘째,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이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애로해결형에 머물러 있고, 미래의 산업구조나 미래의 세계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준비를 도와주는 형의 규제혁신 노력은 크게 부족했던 데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규제의 불편을 호소하는 것도 이렇게 규제혁신 노력이 당시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정책적 노력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뀐 사업환경 하에서는 역시 규제부담을 호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셋째, 우리 경제·산업구조에서 성장형 중소기업은 주로 대기업과 연관된 비즈니스 분야에서 (부품·소재, 서비스 등을 대기업에 제공해 주는 사업) 발견될 수 있으므로, 이들 중소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혁신보다는 관련 대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관된 패키지 규제혁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들 대기업들의 비즈니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사업기회를 더 열어줄 가능성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기업들의 사업기회가 늘어나면서 기존 중소기업과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넷째, 역설적으로 최근으로 갈수록 벤처기업 혹은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를 열어주는 규제혁신에 중점이 맞춰지면서, 전통적인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반작용으로 이들 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정책적 목적과 엇갈리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과연 지금까지 중소기업 규제개혁은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면서도 스타트업(신산업·신기술)의 진입규제를 열어주는 길이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제언 세부내용

### 기존 규제혁신 제도적 장치의 개선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확충

-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규제혁신의 제도로서 시행된 연륜은 짧은 편이지만 비교적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글의 모두에서 언급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도입 초기에 4개 분야를(ICT,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특구)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규제자유특구법 등을 개정한 후, 동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을 사업화하려고 하는 경제 주체가 강한 규제나 혹은 역으로 규제의 부재로 인해 소관 부처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워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왔던 상황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잠정적이거나 규제 적용을 면제시켜 줌으로써(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의 3종 제도를 도입) 사업화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고무되어 다시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의 2개 분야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연구개발특구법 등을 개정하여 비슷한 사업화의 길을 열어주었다.<sup>1</sup>
-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OECD 등에서 권고하는 규제혁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규제보다는 규제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한적인 기간이나마 실천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서 규제혁신의 좋은 방향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이나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이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는 자체가 매우 어렵고, 실제로 규제 소관 부처가 이 제도를 주도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규제의 면제 적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핵심 지적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과 이들과 연계되어 일하고 있는 연구기관들의 규제연구센터들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공회의소 등의 전문인력들을 확충하여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과정에 국무조정실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입을 의무화하는 대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sup>1</sup> 김권식, 『중소기업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중소기업연구원, 2021 참조.

- 나아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선정된 분야와 관련이 없는 분야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규제혁신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 정부규제에 대한 상대적인 불만감이 생기게 되고 규제부담을 호소하는 입장에 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다른 신산업·신기술 분야에도 제도를 넓힐 필요가 있다.

### 📌 규제 차등화 제도의 개선<sup>2)</sup>

- 중소기업의 규제 순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차등화 제도는 중소기업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규제 차등화의 절차를 살펴보면, 규제를 도입하려는 부처가 그 새로운 규제가 가져올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의 과중함을 분석·예측하고(즉,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정리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 이를 규제 도입 법률(안)에 포함시킨 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정책연구기관 규제연구센터들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게 하고 있다. 즉, 규제 도입 부처들이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을 전문가들이 모인 비용분석위원회에서 심의·검증한 후에 이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 보내고, 소관부처는 이러한 심의·검증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수정·보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아예 초기 규제 도입 단계에서 규제를 도입하는 담당자를 도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도와주고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만드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러한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연구기관의 규제연구센터와 함께 규제영향분석 전문가단을 형성하여 규제 소관 부처들의 규제입법과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매뉴얼』, 2019 참조.



### ☞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확충

-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는 중소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전개하는 가운데 큰 애로로 부딪치게 되는 개별 규제들을 해결해 주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해 온 제도이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는 2008년 말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한 후 2009년에 발족한 이후 정부 부처를 뛰어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활동하면서 성과를 거두어 왔고, 초기에는 매년 1,000여건의 중소기업들의 애로성 규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sup>3</sup> 이후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규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지방 센터를 여는 등 그 활동범위를 확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중소벤처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례로 2011년의 규제 차등화 제도 도입과 2014년의 규제개혁신문고제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 전문가<sup>4</sup>의 분석에 의하면,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사례 중에서 규제 완화의 사례가 전체의 76.4%를 차지하고 있고, 규제의 품질을 관리하는 더 높은 단계의 규제개선 사례는 전체의 13.0%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옴부즈만을 통한 규제혁신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다른 한편으로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사례 중에서 법률 차원에서 개선된 사례가 전체의 6.9%를 차지하는 반면, 시행령·시행규칙 차원에서 개선된 사례, 규정·지침·계획 등의 차원에서 개선된 사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개선 사례가 각각 전체의 51.6%, 34.1%, 3.3%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수단이 법률 차원보다는 그 하위 수단인 시행령·시행규칙이나 심지어는 특정 부처·기관의 규정·지침·계획 등의 차원에서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이들 하위 법령 차원에서의 규제개선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덜어주는 데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방증해 주고 있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이와 함께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옴부즈만 등의 중소벤처기업 규제개선 담당 기관들이 단순한 규제의 애로사항 개선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서류작업 및 관료주의 저감, 관리부담 최소화, 절차 간소화, 중소벤처기업의 준수비용 저감 등의 노력이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 개선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sup>5</sup>

3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osmb.go.kr/main>

4 이해영,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특성과 시사점 - 중소기업옴부즈만의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 『규제연구』 제28권 제1호, 2019년 6월.

5 이해영, 2019년 6월 및 OECD, Small, Medium, Strong, Trend in SME Performance and Business Conditions, 2017 참조.

### 📌 기타 제도적 장치들의 중소벤처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개선

- 규제 차등화 제도는 별도로 다루었으므로, 규제개혁신문고 제도에 대해 검토해 보면,<sup>6</sup> 이 제도의 처음 취치와는 달리 일반 중소기업들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쩌면 이러한 취치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전문적 인력의 부족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다른 제도와의 연관성까지 동시에 살리려면 이 제도를 중소벤처기업 규제혁신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중소벤처기업부도 당연히 중소벤처기업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까지 추진해 온 중소벤처기업 규제개선을 위한 65개 과제를 목적별로 분류해 보면,<sup>7</sup>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13), 기업 현장애로(31), 창업규제 혁신(8), 중소 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5), 기타(8) 등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진흥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려면, 향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창업규제 혁신 등과 같은 규제개선에 정책적 역량을 기울이고, 중소벤처기업의 규제보담을 줄여주는 규제 품질의 개선 노력에 정책적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인력 구성에 규제혁신 전문인력들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미래 전향적인 제언

#### 📌 중소벤처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전담 인력풀 형성

- 대부분의 중소벤처기업들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에 비해 규제에 대한 부담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지고 있고<sup>8</sup> 심지어는 규제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아예 활용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이들이 안고 있는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도와줄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6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inmungo.go.kr/sz2.prpssl.main.laf>.

7 김권식, 전게서.

8 국무조정실, 전게서.

- 한편 규제혁신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서 연구·분석·조사하는 인력들은 정책연구기관들의 규제연구센터나(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중소기업연구연구원 등),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인력 등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개별 규제 문제를 도와주기에는 각자가 기관의 일원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거나 지나치게 고급인력인 경우가 많아서 개별 규제 문제에 투입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이들의 업무들도 새로운 중요 규제 도입 시기의 일반적인(중소벤처기업에 한정되지 않은, 혹은 개별 중소기업 문제가 아닌) 규제영향분석 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 따라서 개별 중소기업들이 가지는 조금 미시적인 차원의 개별 규제개선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전담하여 도와주는 데 투입될 수 있는 별도의 전문 인력풀을 형성해 두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들 전문인력들을 파견해서 해결해 주는 제도를 고안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 졸업 후의 고급인력들에게 좋은 실무경험을 쌓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규제혁신 전문가들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을 제외하면 개별 부처에서 규제혁신을 담당하는 인력들이나,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혁신을 담당하는 인력들의 수가 매우 적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혁신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을 때 이러한 인력풀을 투입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 중소기업진흥공단 규제혁신 기능 및 전문인력 확충

- 중소기업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요한 자금지원 기능 등 다각화된 정책적 지원 기능을 수행 중이다. 자금 문제와 함께 과중한 규제에 인한 순응부담 문제가 중소기업들의 대표적인 애로들의 하나인 만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들의 규제순응 그리고 규제개선 문제를 도와주는 기능이 확충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공공 기능으로서의 '중소벤처기업 규제혁신 전담 인력풀'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해서 중소기업의 각종 규제혁신 문제를 도와주는 플랫폼 기능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이 기능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확충한다면, 중소기업들이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인력풀 관리 기능 센터를 두고 각 지방마다 분소를 두어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 전문성이 커가는 분야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가 여타 분야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책임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고, 그 전문성이 산업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들에 대해서는 역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유망한 양대 분야로서 항상 거론되고 있는 IT와 바이오 기술 중, IT 분야는 이미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산업분야(CT, 산업융합, 금융혁신 등)의 새로운 산업의 성장 경로를 열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해, 바이오 분야는 여전히 그 길이 막혀 있다. 이 분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예상보다도 빠르게 사람들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크게 주목을 끌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술력을 키워가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이 이들에게도 비즈니스의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결론

- 모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중소벤처기업들만 특정하여 그들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혁신한다는 접근방식은 역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지금까지 보호·지원의 대상이라는 우리 정부의 생각과 중첩되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한다는 관점에서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규제를 혁신한다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시각을 더욱 넓혀서 규제혁신을 추진해 가는 것이 결국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이로울 가능성이 클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규제들은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이러한 시각으로 규제혁신의 기초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 규제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항상 제시해 주고 있는 OECD는 규제를 자주 완화 혹은 변화시키는 것보다 정해진 규제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의 순응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 일반적으로 정부의 규제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중요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렵게 도입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나아가 철폐·혁파해 버린다면, 그 정책적 목적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가 다시 부상했을 때는 그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대두하게 되고 그렇게 강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완화·강화를 거듭하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순응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과감한 규제완화·철폐·혁파 등이 좋은 대안이 아니라 기업들에게(특히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규제의 설계 단계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또한, 중소벤처기업들과 관련된 규제혁신을 추진할 때도 이들 기업들의 유연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규제개선의 방향도 기업활동의 유연성 제고, 규제의 품질 제고, 공정경쟁 기회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OECD도 항상 권고하고 있지만 기업이나(특히 중소벤처기업) 국민들의 규제 순응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좋은 규제를 만들려면 규제 설계 단계부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정부도 규제협의제도, 공청회 의견 청취 등을 도입해 두고 있다. 선진국에서 규제 도입의 당위성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에서도 규제 도입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진정한 협의와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규제혁신의 근본적인 노력은 피규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중시해야 할 때이다.





##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향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



### 경쟁을 도모하고, 융통성을 부여하는 규제체제 구축

- ✓ 신산업 전환·진출 등 중소기업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규제개혁
- ✓ 중소기업이 니치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규제개혁
- ✓ 경쟁을 도모하고 퇴출을 쉽게 하는 규제개혁
- ✓ 중복규제를 제거하고 규제대체방법의 활용을 장려하는 규제개혁
- ✓ 투명성·준수를 중요시하는 규제개혁

## 서론 -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

- 2020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729만 개사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 99.9%를 차지하며, 종사자의 숫자는 1,754만명으로 우리나라 민간 종사자의 81%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건강해야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경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 중소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사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중소기업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에는 규제도 포함되어 있다.
- 규제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여러 면으로 제한시킬 수 있다. 규제는 기업의 활동범위를 제한시키고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노동자 보호, 환경보호, 지역보호와 같이 사회와 약자의 보호 등 바람직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규제라도 규제의 디자인이 비효율적이어서 규제준수가 어렵거나 준수비용이 너무 높다면 중소기업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규제라도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활동과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가령 특정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을 돕는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은 다른 방향으로의 발전을 자제할 수 있다. 또 특혜를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만 제한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일부로 기업의 확장을 자제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규제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돕기는커녕, 소극적인 한계기업으로 절제시키는 장벽의 구실을 한다.
- 중소기업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막지 않게 각종 장벽을 제거하고, 필요 없이 높은 비용을 낮추어주며, 그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험을 허용하는 규제체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 이들의 자유를 보장하여 각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자기 자리, 즉 고유한 니치(niche)를 찾을 수 있도록 탐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즉, 정부가 중소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규제나 지원제도보다는 중소기업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뒤에서 밀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경쟁에 노출시켜 근력을 키워주도록 해야 한다. 이의 기본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및 장벽을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진입이 자유로우려면 퇴출도 최대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퇴출 부담이 너무 크면 잠재적 창업자들은 처음부터 창업과 시장진출을 기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 또 살릴 수 없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을 보호해 주는 규제를 너무 많이 도입하면 이는 활발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경제환경을 마련해 주기보다는 한계기업들만 키워주는 경제환경을 육성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을 과잉보호하는 규제를 제거하고 경쟁을 도모하는 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쟁에 노출되는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운 환경을

느낄 것이고 퇴출될 가능성도 처음에는 높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탄탄한 기반을 가진 중소기업이 될 것이고, 국내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

- 현재 규제개혁은 기업들의 비용을 감소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 목표로 잡고 있다. 기업의 비용, 특히 투자에 대한 비용을 줄여주기만 한다면 중소기업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고, 이 논리는 일부 타당하다. 높은 비용은 자금력과 자본이 풍부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더 큰 장벽이다. 그러나 단순히 비용을 줄여준다는 개념으로만 규제를 개혁하면 규제개혁의 가능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없다. 규제개혁은 국내기업들이 시장경쟁 하에서 그들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행해야 규제개혁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
- 아래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입장에서 규제개혁이 실시해야 할 방향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한다.

#### 날렵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게 하는 규제개혁

- 중소기업 관련 연구를 보면 중소기업의 장점은 기업이 비교적 작고 날렵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쉽고, 기회를 보면 대기업보다 새로운 사업에 더 빨리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보면 대기업보다 오히려 느리게 움직이고 사업분야를 변경하기도 더욱 더딘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변화를 막는 규제가 있다면 이러한 규제는 제거되거나 최대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 중소기업의 변화를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는 사업활동 분야를 제한하는 규제를 들 수 있다. 어떤 나라든지 회사를 창립할 때에는 그 회사의 사업분야를 등록하게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산업인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과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서서히 기존 분야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활동을 변경할 수도 있다. 아마존이 처음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책을 파는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곧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적인 유통업체로 발전되었고, 여기서 필요한 각종 IT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이제는 IT 서버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었다.
-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다른 산업분야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분야를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때 담당부처가 달라지면서 적용되는 법이나 규제가 달라지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억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면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이동하지 못한다고 한다. 또 기업이 다른 산업으로 진출한다고 하여도, 기존 사업분야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기존 규제를 엄수해야 하여 기업의 비용이 높아지는 경우도 볼 수 있다.



- 중소기업기업부는 어떤 산업을 대변하는 부처가 아니라 중소기업들을 범산업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이러한 산업별 장벽을 약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들이 자기들의 장점과 경제적 기회를 따라 변화를 추진하고자 하지만 법이나 규제에 대한 장벽으로 변환이 어려울 때 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또는 규제적 조안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정부와 국회에 법과 규제의 변화를 요청할 수가 있을 것이다.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특정 산업분야에 한정하는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일반적 특징을 따라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이 주 산업분야를 전환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지원을 유지해 주고, 기업이 자란다고 해서 지원이 갑자기 끊이지 않도록 규제와 지원의 방법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정책은 산업분야에 대한 차별이 없는 네거티브 규제 쪽으로 규제정책을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 산업분야에 대한 차별이 없는 규제정책은 신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용어 중 하나는 융합으로 여러 사업분야가 혼합된 새로운 사업분야가 창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융합으로 창출된 새 산업을 억지로 기존 틀에 맞추어 규제하려면 이러한 융합산업을 성공할 수 없고, 오히려 복잡하고 상반되는 여러 분야의 기존 산업별 규제들에 노출될 수 있어 신산업의 싹을 꺾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여기서 네거티브 규제가 중요하게 된다. 네거티브 규제란 기존 규제를 약화시키거나 규제대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규제를 할 때 기본적으로 금지될 사항만 규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별로 등록이나 인증, 허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의 기본 입장이다. 융합이 중요한 산업에서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가 중요한 것은 기업의 융통적인 변화를 허용해 준다는 것이다. 기업이 융합산업 발전에 따라 사업분야나 생산방법을 변경해야 할 때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받고 일반 경우에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을 변경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분야에 진출할 때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의 발전은 최대한 자유롭게 된다. 가끔 언론보도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기준이 없어서 새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다”고 언급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를 돌아켜보면 이는 규제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현재 너무 많고 사소한 규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네거티브 규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 중소기업의 니치(niche)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규제개혁

- 과거 중소기업 장려정책을 보면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을 처음부터 정부가 지정하거나, 현재 중소기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을 중소기업만이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선정시켜 중소기업을 보호해 주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산업활동의 규제는 처음에는 중소기업들의 수익성과 존재를 보장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퇴보 및 중소기업의 빈곤화를 가지고 온다.
- 중소기업이 계속 발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부 산업분야를 중소기업에만 제한하고 경쟁을 제한시키면 이러한 중소기업은 더 이상 생산성 증가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면도칼, 배터리, 전기전구 등 일부 산업분야를 중소기업들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시켰는데 시장이 개방되어 외국 대기업의 상품이 들어오니 이 중소기업들은 수입품과 경쟁할 수가 없어 사업이 축소되거나 퇴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단, 이들 중 일부 업체들은 수입품과 경쟁하면서 오히려 생산성을 높여 그들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어떤 산업에 집중될지, 대기업은 어떤 산업에 집중될지를 판단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통해서 판단해야 한다.
- 일부 사람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경쟁을 허용하는 경우,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지원 때문에 중소기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 오히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먼저 시장을 개척하고, 대기업은 이렇게 성공한 중소기업을 M&A를 통해서 매입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창업자는 그의 노력에 대한 높은 대가를 받게 된다.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시장 선도자가 되는 경우를 보기 어려운 것은 경쟁정책이나 지적재산권 보호가 아직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활동분야를 인위적으로 할당하는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갈취하는 경우, 또는 부당한 그룹 보조금으로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약탈적 경쟁을 시도하는 경우,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이를 막아야 한다. 규제보다는 이러한 사후관리로 중소기업 보호체제를 전환하고, 중소기업이 부당한 손해를 받지 않도록 대기업으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경쟁정책 및 민사소송제도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 또, 최근에는 4차산업혁명에 따라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찾아야 한다고 하여 규제개혁을 특정산업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규제개혁을 안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인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편향적인 규제개혁은 불완전하다. 먼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무엇이 될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고,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면서

기존업체들이 이 새로운 산업의 생산에 재빨리 움직여야 할 경우도 있다. 15여 년 전 아이폰이 처음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이 우리나라 전자업체들의 주력상품이 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었으며, 아이폰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는 주파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는 수입을 막고 국내업체들을 보호해주면서 국내업체들이 스마트폰 시장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오히려 줄였다. 아이폰의 국내시장 수입이 허용되자 국내업체들이 여기에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오히려 국내 스마트폰 생산활동이 가속화되었다. 미래의 산업이 무엇이 될지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 또 신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지만, 일단 현재의 우리나라는 기존 먹거리 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산업의 규제개혁도 신산업 못지 않게 중요하다. 또한, 신산업이 전통적 기존산업에 의존할 수도 있다. 일본의 수입규제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미친 영향을 보면 일본이 수입을 불허하여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을 마비시킨 화학상품들은 신산업 상품도 아닌 기존 전통적인 화학상품이었다. 일부 상품은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지만, 그릇된 환경규제와 비용의 증가 때문에 국내생산이 줄어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미래의 신산업이 어디서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모든 상품과 서비스들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가 유지되어야 신산업도 꽃을 피울 수 있으므로 일부 산업만에 규제개혁을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산업들이 잡초같이 일단 자랄 수 있고, 이 중 우리 상황에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산업들이 커질 수 있는 공평한 경쟁터를 만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 경쟁을 도모하는 규제개혁

- 생산성이 높은 국가를 보면 한 산업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기업과 생산성이 가장 낮은 기업을 비교할 때 생산성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 반면, 생산성이 낮은 국가는 기업들간의 생산성 차이가 크다. 이는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이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경쟁업체들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지속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보다는 경쟁에 노출시켜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성이 낮지만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생산성이 높아질 수 없는 기업들은 빨리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산업구조와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규제개혁도 이러한 경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은 그 산업의 생산성과 성장률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 한 산업의 생산물은 여타 산업들의 생산 투입물이 되는데, 이러한 투입물의 가격이 너무 비싸면 이는 다른 산업들의 경쟁력도 감소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오게 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이라도 노동이나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업체들이나 새로운 산업의 활동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경쟁을 활발하게 하고, 필요시 비효율적인 기업들의 퇴출을 빨리 유도할 수 있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 일본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세계 첨단 생산성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중소기업 위주 서비스업체들의 생산성이 계속 부진함에 따라 일본 경제의 경쟁력이 저하되었고,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을 유지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나 보호규제는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보호해 주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소득동결 및 한계기업 증가 등의 악영향을 초래했다.
- 부분적이라도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얼마 전 정부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들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만 입찰이 가능한 수의계약 제도를 중소기업들간 경쟁하는 제도로 전환한 것은 경쟁을 유도하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 생산성을 도모하고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들이 항상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하여 기존 기업들에게 도전을 할 수 있어야 경쟁적인 환경이 유지된다.
-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시장진입 규제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세계은행의 2007년 Doing Business 보고서에 의하면 창업관련 규제에 있어서 한국의 순위는 116위이었는데, 지속적인 개혁에 따라 이 순위는 2019년 11위까지 올랐다가 2020년 34위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수년간 노력으로 창업규제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진출을 아무리 용이하게 규제를 개혁한다고 해도 기업 퇴출이 어려우면 창업 인센티브를 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퇴출관련 규제도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 또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잘 나가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졸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이러한 지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 기업들은 일부로 기업을 키우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통계를 보면 대체로 중소기업들보다는 대기업들이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좋은 의사로 도입된 규제라도 효율적인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는 규제가 있다면 이는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전락할 수 있다.
- 이러한 문제를 다소 해소하려면 잘 나가는 기업이 더 커질 때 지원을 완전히 끊지 않고 서서히 줄여주는 제도가 필요할 수 있다.

### 퇴출을 쉽게 하는 규제개혁

- 창업 규제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기업퇴출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기업가가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 만약 사업이 실패할 때 무리한 손해가 따르거나 기업을 쉽게 폐업할 수 없어서 손실을 끊을 수가 없다면 창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기업이 폐업할 경우,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공장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도입될 수 있으나, 창업을 아무리 쉽게 하도록 개선한다고 해도, 기업의 폐업 시 손해를 과대하게 크게 하는 규제를 도입한다면 창업활동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중복규제를 제거하는 규제개혁과 규제대체방법의 활용을 장려하는 규제개혁

- 우리나라의 규제가 번거롭고 비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규제가 중복, 중첩되는 덩어리 규제가 많다는 점이다.
- 이러한 중복규제나 덩어리규제를 제거해야 하겠고, 제거할 수 없으면 간소화시키고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중복규제들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의 준비작업으로 산업별로 업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에 대한 일종의 통합공고를 마련해 주기를 권장하고 싶다. 여러 부처가 요구하는 규제를 하나의 서류에 일단 모아서 업체들에게 제공해 주면서 중복규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규제들을 모아 알려주어 규제준수 및 준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추가로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현재는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과감하게 철폐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규제 대체방법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이 떨어지는 규제 종류의 사례는 품질관리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을 대부분 정부가 취해야 했었다. 정보기술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는 품질과 특정 생산방법을 강요하는 생산규제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 그러나 현재는 정보기술이 발달되어 웬만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이 그 품질이나 문제점을 서로 알려주고 있다. 물론 의료 서비스같이 소비자들이 그 품질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상당한 위험성이 따르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품질과 생산방법에 대한 의무 규제가 계속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제는 품질보증을 위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회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은 소비자들의 자평에 맡기게 하는 개혁이 가능하다. 특정 생산방법을 강요하지 않으면 이는 새로운 생산방법을 융통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 투명성과 준수를 중요시하는 규제개혁

- 법과 규제의 목적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고, 이를 위해서는 피규제자들이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일단 위의 원칙들에 따라 필요없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좋은 법과 규제를 도입했다면, 이를 널리 알려 준수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규제를 계속 만들지만, 피규제자들이 이러한 규제를 알지 못해서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 규제는 전혀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법이나 규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피규제자들이 이를 알아야 준수를 할 수 있다. 흔히 중소기업을 보면 이들이 어떤 법이나 규제를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기업체들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한 법이나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이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면도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들이 그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과 규제를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를 어떻게 홍보해야 할 지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 수입이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부처들의 법과 규제를 한 서류에 모으는 통합공고를 통하여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법과 규제에 대한 준수가 향상되면서 수입과 외국인투자가 증가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 법과 규제의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사업체들은 규제를 무시하거나 준수를 기피할 것이다. 원래 규제의 목표가 준수를 통한 사회적인 목적의 실현이라면 준수를 하지 않는 법이나 규제같이 필요 없는 것은 없다. 따라서 법이나 규제를 도입할 때에는 이를 지켜야 하는 피규제자들의 입장에서 준수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는 것은 필수이다.
-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처음부터 통과되지 않아야 하지만, 꼭 필요한 규제는 일단 준수되어야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실현될 수 없는 규제를 도입시킨다는 것은 그 규제가 필요 없다든지, 규제를 통해서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목적을 아예 무시한다는 것이다.

## 집행

- 마지막으로 어떤 사회라도 규제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시장실패에 대응할 수 없을 때에는 효율적인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위의 원칙을 따라서 좋은 법과 규제를 도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집행하는 데에도 신경을 쓰고 충분한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 중 하나는 법치주의를 유지하고, 선의적으로 법과 규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기업체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오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며, 악의적으로 법이나 규제를 어기는 사업체가 선의적인 사업체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적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법이나 규제를 어기는 것이 지키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경제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 결론

- 위에서 중소기업 정책 입장에서 바람직한 규제개혁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규제개혁을 통해서 영업비용을 줄이고 투자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을 도모하고 융통성을 부여하는 규제체제를 갖추도록 규제개혁을 진행하면 단순한 비용감소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오고, 중소기업의 발전은 물론 국가 성장률을 높여 국민의 생활과 소득을 크게 개선시켜 줄 수 있다.
- 단, 여기서 중소기업 보호를 주는 규제체제에서 경쟁을 도모하는 규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중소기업과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여기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지를 염려할 수 있다. 이는 규제개혁이나 규제체제보다는 사회적 보호망에 대한 논의이지만, OECD가 각종 규제개혁과 노동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는 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해주는 제도에서 사람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리스크에 노출되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회사를 잃은 창업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회사를 창업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를 만들어 주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보호망도 필요하다고 본다.



## 중소기업 규제혁신 정책방향

박선주 경북대학교 교수



### 불합리한 기존 규제 폐지·완화, 중소 가중 부담 완화(차등화), 지원사업 요건기준 합리화 추진 필요

- ✓ **중소 규제개선 로드맵 설정**
  - 중소기업 생애주기별(창업·확장, 퇴출) 규제이슈, 대기업과의 관계 차등,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생명, 환경 등)간 균형, 불합리한 규제(요건) 등으로 과제구분 후 담당기관 및 집행 네트워크 등 거버넌스 체계화
- ✓ **중소 규제개선 과제 통합관리 및 추적시스템 구축**
  - 피규제자 입장에서 중소기업 규제목록, 개선 건의사항, 개선현황 및 결과를 윈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정책 제언 배경

- 새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약속06)를 만들기 위해 크게 '지원을 통한 진흥'과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활성화'를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음
-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은 개별 규제의 폐지나 완화보다 큰 개념으로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까지 포함하고 있음
  - 규제의 형성과 집행, 기존 규제의 정비 등 규제의 전 생애주기(life-cycle of regulation)에 걸쳐 합리성을 제고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은 줄이되, 규제의 목적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규제의 품질을 관리하고자 함. 현재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은 총체적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에 해당함
  - 즉, 규제의 양적 완화(deregulation)에서 규제품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새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추진 기조에 따라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피규제자 협단체에서 규제혁신 추진체계의 정비와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규제개혁에 대한 통합정보는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등록규제, 규제심사(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과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합하여 규제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모아두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대부분의 정보에 접근 가능함. 현재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에서 실무지원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규제심의, 일몰제, 규제개선 건의 및 아이디어 발굴, 우수사례 선정 등 다양한 조직, 제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 찾아가는 현장 규제개선 과제 발굴, 홈페이지의 규제혁신문고 등을 통해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여러 통로를 통해 건의하고 있음(예:국조실, 행안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별 부처 또는 자체 해결 등)
  -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피규제자와 현장접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홈페이지에 일괄 개설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규제개선 아이디어나 애로사항을 발굴해 옴. 공공기관-민간과의 관계에서 자체적인 내부 규정이나 지침의 불합리성에 따른 개선 건의사항의 경우 상당한 경우 반영(수용)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의 경우 불수용하는 경우가 상당하여 민원인(피규제자,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는 효능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무력감이나 불만이 형성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함

- 우리나라는 규제 형성 단계에서 양적, 질적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나, 의원입법에 따른 규제의 경우 행정규제관리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아 경제·사회규제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
  - 따라서, 규제의 신설, 강화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의 정비(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본 정책제언에서는 개별 규제 개선사항을 건의하기보다는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코자 함

### 정책 제언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개혁시스템 상으로는 OECD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진단되지만, 기업이나 국민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현실
  - OECD는 총체적 규제관리를 위해 규제영향분석제도,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engagement), 규제사후평가를 세 가지 중요한 수단으로 권고하고, 평가함
  -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규제의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하며, 이때 중소기업영향평가가 포함됨
  - 이해관계자 참여의 경우 제도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데, 이 점이 피규제자나 이해관계자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규제를 정비(폐지, 완화, 개선)할 때에도 이해관계자가 개선을 건의하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후의 절차나 기준에 대해서는 공식화, 제도화가 부족함
- 한편,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영리활동과 관련된 기업규제의 개선·합리화가 필요함
  - 이때, 단순히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개별 규제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애주기(창업, 성장과 안정화, 폐업 등)에 따라 규제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여 전반적인 규제 체감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생애주기별 규제 유형 분류】

생애주기	영역	내용
창업	창업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고 또는 인허가 절차 사업개시를 위한 인력 및 시설 등 관련 서류제출 등
경영활동	입지·건축	공장설립 및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입지선정 및 건축 관련 규제, 소방시설 및 안전규제 등
	운영관리	기업활동 일반과 관련한 제반업무로서 이용약관 신고, 종사인력의 면허, 영업질서 유지, 영업 관련 정보, 기밀관리 등
	품질안전	제품 품질검사, 안전검사 및 인증 등 제품 완성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제 등
	제조인허가	제품생산 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및 변경등록
	판매·영업	판매·영업 과정에서 가격설정, 광고제품 표시, 프랜차이즈, A/S보상규정, 하도급 판매, 공공기관 조달, 영업범위 등과 관련한 규제 등
	인력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규제 및 노동시간 임금, 해고, 4대보험, 퇴직연금, 노사관계 등 노무 관리에 대한 규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규제
	금융	자금조달, 자금운용, 회계, 해외자금, 각종 세금 및 부담금·수수료 납부관련 규제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작업장 안전관리 및 안전표시 의무,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등
	환경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생산을 제한하거나 생산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규제
사업전환 및 정리	해외통상	수출입 허가, 검역, 통관절차 등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규제 등
	사업전환·승계 폐업	기업매도, 인수합병 시 적용받는 규제, 자산매각 및 폐업이나 업종전환·추가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규제

\*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2012),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8: 83)

-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규제개혁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실제 BEIS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부담의 가장 큰 부분으로 규제대응 소요 시간과 비용이 꼽히고 있음
- 이는 중소기업에서 규모의 경제 미작동, 상대적 규제대응 역량 부족, 규제 도입 및 개선 시 의견 반영의 어려움 등에 의한 것임
- 현재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차등화를 점진적으로 도입 중에 있으나, 기존 규제의 개선 과정에서 중소기업 규제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개혁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규제 또는 규제혁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개혁 시스템의 재설계 필요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책의 경우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차등화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형성과정(신설, 강화)과 기존규제의 정비(주로 폐지, 완화, 또는 합리화 등 개선)를 구분하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아래 그림은 현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시스템을 도식으로 구조화한 것임

[현 정부의 규제혁신시스템]



- 이 가운데 기존 규제개혁시스템과 차별성 있는 부분은 규제심판제도와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규제심판제도는 각 규제 부처에서 불수용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하여 온,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건의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안을 제시하는 제도임
  - 한편, 관리시스템 혁신 방안으로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규제행정 문화, 행태 개선 강조
- 규제 형성과 기존규제 정비에 대한 디지털기반 데이터 플랫폼의 정교화 및 사용자 중심 활성화 필요
  - 규제혁신 추진시스템에서 법률 조문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를 구축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실태를 검토하여 이를 고도화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 법률조항 단위에서 등록규제를 표시하고, 이는 규제정보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지만 등록규제를 검색하여 데이터화하는 측면에서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은 한계가 있음

- 지금까지 규제정보포털이 상당히 개선되어 기존 규제 가운데 개선과제로 건의되어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수용되었는지 여부, 완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①반드시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이해관계자나 대국민이 언제든지 규제개선 현황을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되며, ②정부가 규제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을 공유하여 반드시 규제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노력에 대한 체감이 높아지며, ③동일 또는 유사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중복적인 건의 및 발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④규제부처에서도 개선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음

#### 【규제정보포털 규제혁신과제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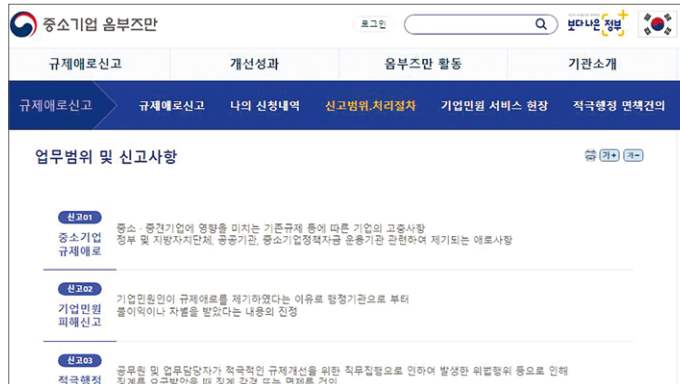
\* 자료: <https://www.better.go.kr/rz.task.TaskSIPL.laf>, 접속일: 2022.11.27.

- 한편, 규제정보포털은 그 자체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나, 실제 피규제자의 경우 해당 분야의 협회나 기관 등을 통해 규제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경향이 나타남
  - 즉, 개별 피규제업체가 일일이 국조실이나 규제 소관부처, 규제정보포털에 접촉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업무 관련 접근성이 높은, 즉 고객접점에 있는 기관(institute)을 활용하여 증가하는 네트워크 구조가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혁의 공식적·제도적인 중개 기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볼 수 있으나, 추진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 고객접점에 있는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화·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아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웹사이트에 제시된 규제애로신고 업무범위임. 중소기업 규제애로, 기업민원 피해신고, 적극행정 면책건의,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를 포함함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신고 업무범위】**



\* 자료 : <https://www.osmb.go.kr/proposal/proposalProcess?menuSeq=23&topMenuSeq=17>, 접속일: 2022.11.27.

- 업무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규제발굴 단계에서 규제발굴 협업플랫폼 역할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유관단체 및 지방 중기청과 협업하며, 그 외 지역별 명예옴부즈만 및 규제 개선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음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업무처리과정】**



\* 자료 : <https://www.osmb.go.kr/proposal/proposalProcess?menuSeq=23&topMenuSeq=17>, 접속일: 2022.11.27.

### 정책 제언 세부 내용

- 2022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르면 ①규제혁신 플랫폼 성과 확대, ②기업활동, 국민생활 핵심규제 개선, ③적극행정 전방위 확산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함
  - 이 가운데 중소기업 규제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혁신 플랫폼 성과의 경우 규제혁신 로드맵 보완과 성과 확대, 신산업, 기업부담, 지역현장 분야 규제 개선, 적극행정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혁신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음. 즉,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구의 결합(policy instrument mixes)이 필요함
  - 실제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상 규제 외에 지원사업의 요건을 규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현행 국가의 규제혁신 시스템은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행정규제, 즉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과하는' 법령상의 규제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피규제자인 중소기업은 각종 지원정책·사업을 위한 요건이나 기준을 제약으로 인식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나 시간 또는 제약을 규제 부담(regulatory burden)으로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체감 및 인식되는 규제의 유형에 따라 규제개선의 대응 방안이 달라져야 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개혁 거버넌스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규제개선·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은 크게 ①일반적인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의 기준에서 불합리한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를 위한 접근, ②중소기업 가중부담 완화(차등화), ③지원사업의 요건이나 기준의 합리화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을 것임
-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기존 주체·제도·통로 적극 활용과 연계 강화 필요
  - 기존 규제개혁 체제 내에 이미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별도의 민관 기구가 존재함. 즉, 공공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민간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와 민간의 규제개혁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는 직접 규제개선 의견을 발굴하기도 하지만, 지자체나 유관기관의 현장접점에서 발굴하여 1차 검토 및 선별된 규제개선 과제를 취합하여, 다시금 자체 검토를 거쳐 규제소관 부처에 개선건의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그 과정에 대한 현황 정보나 결과가 다시 피규제자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아 체감도가 낮은 경향이 있음

- 중소기업 규제 개선 로드맵 설정 필요 : 중소기업 생애주기별 규제 이슈,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차등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 균형, 지원사업의 불합리한 규제 요건으로 구분
  - 앞서 제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향 3가지 가운데, 일반적인 합리적인 규제로의 개선과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에는 지금과 같은 추진체계가 작동할 수 있으나, 세 번째 유형 즉, 중소기업 진흥정책의 전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중소기업이 인식하는 규제부담(행정부담 포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접근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개혁 추진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규제혁신 로드맵, 기본계획, 실행계획 등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반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에 있어서는 개별 규제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개선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규제개선 로드맵(가칭)'을 작성하되, 이 로드맵에는 중소기업 생애주기별 규제이슈,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차등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생명, 환경 등) 간 균형, 그리고 진흥·지원 사업 추진과정 상 불합리한 규제(요건) 등을 구분하여, 각각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민간 기관을 포함하여 로드맵을 작성하고, 실제 집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과제 통합 관리 및 축적 시스템 구축 필요
  - 현재는 규제정책의 공급자인 정부와 소관부처 중심으로 규제정보포털과 각 부처 홈페이지의 규제혁신 과제현황 등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각 산업분야는 규제문제가 정확히 어느 법령에 구속을 받는지 또는 내부지침에 의한 것인지, 규제 소관 부처나 기관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현재와 같이 고급자 중심의 정보는 활용도와 체감도 모두 떨어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반대로 피규제자 입장에서 중소기업 관련 규제 목록과, 개선 건의사항, 개선 현황 및 결과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KOSIME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 PLUS

## 부록






- 01 규제개선 성공사례
- 02 참고문헌

# 규제개선 성공사례






## ◦ 건강기능식품 온·오프라인 소분 판매 허용

 문제점	현재 규제 샌드박스 하에서 소분 조제 및 판매가 허용된 극소수의 건강기능식품만 소분 조제 및 판매가 가능. 각각의 섭취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판매 단위로 인해 잉여 식품의 낭비가 심해 소비자의 불편이 큼
 건의사항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이미 판매 단위로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개봉하여 소비자 니즈에 맞는 방식으로 재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게 개선 필요
 검토결과	건강기능식품을 맞춤형으로 소분 조합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소분 판매를 위한 영업 신설 및 건강상담관리사 제도 도입 필요, 안전위생 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계획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 대체육 표기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신속 제정






 문제점	대체육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체육 표기방법에 대한 축산물 가공업체와의 이견이 심화, 국내 대체육에 대한 명확한 명칭이 제정되지 않아 업계 간 마찰 발생
 건의사항	대체육 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현행 대체육에 대한 표기방법 신속 제정 요청
 검토결과	대체 단백질 식품 중 하나인 식물유래 단백질 대체식품의 정확한 표시 방법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3.6월까지 식물유래 단백질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 ◦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KC인증 기준 마련






 문제점	재사용 배터리에 대한 KC 인증 시험기준은 없으나 제정 예정인 임시안전기준의 성능검사에 너무 많은 시간 소요, 기타 보증 이슈, 조달 등록 어려움 등 시장 활성화 어려움
 건의사항	보다 빠른 성능검사 방법을 마련하여 신속한 인증 취득 및 시장 진입 지원, 에너지 효율전기제품 채택 등 탄소저감 제품에 대한 구매 의무화, 혜택 등 초기 시장 활성화 대책 필요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사용전지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한 전수검사 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추진</li> <li>운행이력 정보(충방전 횟수, 잔존용량 등)를 활용한 SW검사방법을 개발(KTL, ~'22.12.)하여 검사 소요시간의 획기적인 개선 추진</li> </ul>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관련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도금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추가

<p> 문제점</p>	<p>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산업기술역량 축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률 소부장산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지원제도 운영 중 `20.4월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산업분류번호 2592) 중 도금업(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이 제외 처리됨</p>
<p> 건의사항</p>	<p>시행규칙 개정 전과 같이 소부장 범위에 포함</p>
<p> 검토결과</p>	<p>`22.1.2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 도금제품(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제품(25923) 추가</p>
<p> 관련부처</p>	<p>산업통상자원부</p>
<p> 관련법령</p>	<p>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p>






###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 완화

<p> 문제점</p>	<p>경비 및 사업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연구전담요원이 6개월 이상 해외 파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발생. 그러나 현행 제도에 따라 6개월 이상의 해외 파견의 경우 연구개발전담요원의 지위가 박탈되어 기업부설연구소 구성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등 사업 운영 애로 발생</p>
<p> 건의사항</p>	<p>해외에 있더라도 충분히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이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 연구 인력의 6개월 이상 해외 파견이 가능하도록 업무 편람 내 기준 완화</p>
<p> 검토결과</p>	<p>연구전담요원이 연구시설 안에서만 근무해야한다는 준수사항(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p>
<p> 관련부처</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p>
<p> 관련법령</p>	<p>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p>






### ◦ 전동 킷보드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p> 문제점</p>	<p>전동킷보드 주정차 문제 관련한 법 조항 미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시행 중이나 전동킷보드 주정차 관련 통일 기준이 없어 관련 사업자들의 혼란 야기</p>
<p> 건의사항</p>	<p>특정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전동 킷보드 셰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 도출 필요</p>
<p> 검토결과</p>	<p>즉시 견인구역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견인 이의신청 절차 마련</p>
<p> 관련부처</p>	<p>서울시</p>
<p> 관련법령</p>	<p>도로교통법,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p>






### ◦ 법인전환 기업 대상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적용

 문제점	개인기업이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 시, 권리가 법인기업에 포괄적으로 이양되어 기업의 연속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수출자인증은 승계 불가
 건의사항	포괄양수도를 통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실질(대표자, 사업내용 등)이 동일하고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확인서류 제출을 통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승계가 가능하도록 개선
 검토결과	관세청은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을 비롯해 기업의 동일성·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변경신고로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 * 다만,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확인서류 등 세부검토가 필요한바,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은 '22년 11월까지 완료 예정
 관련부처	관세청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 ◦ 채용 당일 안전보건교육을 사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개선

 문제점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채용 당일 8시간 이상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만 이로 인해 즉각적인 인력투입이 불가능하여 기업의 생산 효율성 저하
 건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채용 당일 8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전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선
 검토결과	사업주가 '채용 시 교육'을 포함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원격교육'과 '실시간 화상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정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 ◦ 관세 환급 정책안내 홍보채널 강화 및 신청기간 연장 요청

 문제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관세환급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수출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한 내 환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건의사항	관세 환급제도 정책홍보 강화 및 신청기간 연장 * (건의①) 홍보채널 다변화 및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환급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건의②) 관세환급 신청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청은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 환급제도 설명회와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실시간 미환급금 안내 및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전개 중</li> <li>기획재정부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신청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관세환급특례법 개정을 202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 바 있으며, '22년 9월 국회 제출 및 '23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예정</li> </ul>
 관련부처	관세청, 기획재정부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 ◦ 중소기업 대상 환경표지인증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문제점	환경표지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자원(인적, 물적)을 소모하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인증 받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음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우 판매채널 확대가 중요한 과제이고, B2G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환경표지인증의 중요도는 증가하나, 인원이 한정적이고 자금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기업부담 증가
 건의사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신청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여 기업 부담 완화
 검토결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및 사용료(환경부고시)」를 개정(22.3.25)하여 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감을 확대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상 환경표지 사용료 감면율(최대 90% 감면→100% 감면) 및 감면대상(30억원 미만→60억원 미만) 확대
 관련부처	환경부
 관련법령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 ◦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문제점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행정기관이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임에도, 정책 수요자에게 PDF 스캔본 제출을 요구하여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 발급 및 제출에 애로가 있으며, 기업에 불편 초래
 건의사항	정부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중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사업 수행기관이 신청기업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직접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의 행정업무 처리 간소화 추진
 검토결과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신청 시 현행 35건의 제출 필요서류를 23건으로 간소화하여 사업 신청업체의 부담 최소화, 행정정보공공이용시스템을 활용하고 서류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신청업체의 제출서류 부담 경감 추진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법령	20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공고






### ◦ 국가어항 배후부지 내 야영업 시설 추가 가능토록 규제 완화

 문제점	어촌-어항법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에 의해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에서 정한 시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건의사항	국가어항 배후부지 내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에서 허용되는 시설에 야영장 시설 추가
 검토결과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에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유사시설인 '캠핑장(=야영장)'의 설치도 가능하지만, 지자체 공무원 사이에 해석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향후 시행령 개정 시 동 건의사항 반영 예정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관련법령	「어촌-어항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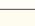


### ◦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저장량 한계기준 완화

 문제점	특정고압가스로 분류되는 산소의 경우 250kg, 50m <sup>3</sup> 이상 저장하면 관련 지자체 신고 및 완성검사가 필요하여, 사업(수산물 취급, 병원 등)에 따라서는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과도한 기준으로 작용
 건의사항	특정고압가스 유통 등이 주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각 사업 추진목적에 따라 시설 및 사용신고 기준 완화 / 저장능력 산출방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검토결과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액화가스, 250kg → 500kg)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2.7월자로 시행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관련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 제2호, 별표8 제2호

### ◦ 기술창업(D-8-4) 비자 취득 평가기준 완화






 문제점	법무부에서는 기술창업(D-8-4) 비자를 신설하여, 예비 기술창업자가 국내·외 투자 전문회사로부터 1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기술창업 비자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책금융기관 금융 지원의 경우 기술창업 비자 부여 혜택이 없음
 건의사항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을 평가·인정받아 1억원 이상 투자 또는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민간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와 유사하게 창업비자 발급을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기술창업 비자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선 예정
 검토결과	창업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총괄과)와 협의를 통해 정책금융 수혜자 대상 기술창업비자 발급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해 나갈 예정
 관련부처	법무부 체류관리과, 중기부 창업정책 총괄과
 관련법령	기업투자(D-8)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 ◦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류 간소화






 문제점	시흥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7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신청기업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서 작성 시 불필요한 항목까지 요구 (예 : 회사 약도)
 건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최대한 신청양식 간소화 평가 시 평가에 필요한 서류만 징구하여 중소기업 편의성 향상
 검토결과	차년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추진 시, 현재 신청서식 중 회사약도 등 불필요한 서식은 삭제하여 평가서류를 간소화할 예정
 관련부처	시흥시 기업지원과
 관련법령	21년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 ◦ 우주신기술 지정 및 적용 제품 우선구매 제도 마련

 문제점	우주개발 사업은 우주개발 진흥법령에 따라 정부 주도의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시장의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으로 판로확보에 애로가 발생하여 관련분야 기술개발 및 전후방산업 혁신창업이 정체되는 원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검토결과	「우주개발진흥법」(22. 12. 11.시행)에 우주신기술 지정 내용 등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지정절차 및 우선구매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예정일에 맞추어 제도를 마련할 예정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관련법령	「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7






### ◦ 관내 각급 학교의 물품 구입 시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 개선

 문제점	광주광역시 관내 각급 학교가 추정가격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불가능
 건의사항	광주광역시의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을 지방계약법령 및 전라남·북도 등 인근 지자체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 요청 * (현행)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 (개선안)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검토결과	학교현장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범위 내 타 시도교육청과 동일하게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추정가격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검토 중
 관련부처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관련법령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 계약관련 업무추진 지침





### ◦ 세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중복지원 방지제도 개선

 문제점	세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등의 융자, R&D 보조금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당해연도에 동일 용도 자금을 기지원받은 경우 자금 지원 제한
 건의사항	정부지원 자금(중소기업융자공고 등)과 동일하게 정부, 지자체 지원 합산 100억원 초과기업만 제외
 검토결과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시, 공고 항목인 기업지원 제외대상에서 2022년도 동일 용도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조항을 삭제하여,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세종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관련부처	세종시 기업지원과
 관련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 ◦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제외 대상 기준 완화

 문제점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제외 대상에 '최근연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 초기기업이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 존재
 건의사항	업력 5년(또는 7년) 미만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최근연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지원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
 검토결과	지원제외 대상 항목에서 '최근연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의 조항을 삭제할 예정
 관련부처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관련법령	2022년도 울산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문제점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 창업기업의 접근성은 낮은 상황, 각종 인증과 면허 요건이 장벽으로 작용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실패하는 사례 발생
 건의사항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구매제도에서의 각종 인증 및 면허, 혁신제품과 우수조달 등에 관한 교육 요청
 검토결과	공공시장기본교육 및 신제품-신기술 인증 등 인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인증 및 면허, 혁신제품과 우수조달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확대를 적극 검토 예정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 수출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 변경

 문제점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간접수출이 직접수출보다 빈번하지만 수출바우처사업 평가지표는 전년도 직접수출실적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동일한 수출실적 보유기업이라 하더라도 직접-간접 방식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지는 문제 발생
 건의사항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에서 직접-간접 수출 구분을 폐지 또는 간접수출 실적에 대한 별도 평가지표 신설
 검토결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간접수출도 수출실적 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모집 공고 시에는 직접-간접 방식의 구분 없이 모두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관련법령	판로지원법 제26조






###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제외 사항(부채비율) 개선

 문제점	기업의 업력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제한기준 적용 시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창업 초기기업이 지원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 존재
 건의사항	차후 공고 시 창업기업에 대해 부채비율 적용 완화
 검토결과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에도 지원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차 모집(22.9.27~10.11)부터 부채비율 조항을 삭제 후 공고 진행
 관련부처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관련법령	2022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 ◦ 첨단화학소재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자격 제한기준(부채비율) 완화

 문제점	기업의 업력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제한기준 적용 시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창업 초기기업이 지원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 존재
 건의사항	차후 공고 시 창업기업에 대해 부채비율 적용 완화
 검토결과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에도 지원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차후 모집공고(23년)부터 업력 5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
 관련부처	한국화학연구원 정밀화학융합기술연구센터
 관련법령	22년도 울산지역 첨단화학소재 기술개발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예외 규정 신설

 문제점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행기관을 통하거나(지정형), 참여기업이 단독 진행하여 사후정산(개방형)을 받아야 하지만, 신규 해외규격인증의 경우 국내 수행사에서 컨설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수출바우처로 활용 불가
 건의사항	검증된 해외규격인증에 한하여 국내 수행기관 컨설팅이 어려운 경우, 해외 수행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신설
 검토결과	해외규격인증 서비스 중 컨설팅은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서만 활용이 가능했지만, '22년 10월 중으로 정산가이드를 개정하여 사후정산을 통해서도 정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사후정산으로 이용할 경우 해외 수행기관 활용 가능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관련법령	판로지원법 제26조

### 정책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2.07.28.),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
- 관계부처 합동(2022.60.23.),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
- 관계부처 합동(2022.09.5.),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 관계부처 합동(2022.10.17.),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 관계부처 합동(2022.10.17.),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
- 관계부처 합동(2021.01.27.),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 관계부처 합동(2021.12.30.),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2022.0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관계부처 합동(2022.2.15.), 「2022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 관계부처 합동(2022.6.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2.06.14.), 「규제혁신에 국가역량 총결집, 경제 재도약 선도」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1.01.14.), 「경제반등·민생안정 목표로 규제혁신에 총력」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06.15.), 「2022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 !!! 연구자료 외

- 강준모 외(2017),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대한상공회의소(2021),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 글로벌비교”, Global Insight Vol.69
- 김선경(2022), “2022년 IMD 세계경쟁력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국제무역연구원(2019), “신산업 규제개선에 관한 우리나라와 주요국 비교”
- 산업연구원(2020),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 신동준(2019),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황과 정책방향”, 월간 KIET 산업경제 2019.11
- 길홍근(2017),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와 과제”, 월간 KIET 산업경제 2017.1
- 이규석(2021), “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기 규제혁신을 위한 역할고도화 연구용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2), “산업구조 변혁기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2), “KOSME 이슈포커스(2022-5), “중소벤처기업 규제혁신 동향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정병욱** 중진공 규제정책연구실장

연구자 **양지애** 중진공 규제정책연구실 부장

외부자문 **김도훈** 서강대학교 초빙교수(전 산업연구원장)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

**박선주**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KOSME**

중소 정책연구 리포트  
2022-03호

##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2022년 11월

발행인 김학도

편집인 규제정책연구실

발행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52851)  
전화 055-751-9271, 팩스 055-751-9411  
홈페이지 [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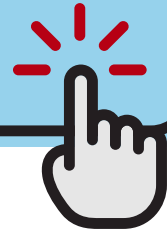
제작 디자인서가(02-735-1711)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기관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성장과 규제혁신  
중진공이 함께 합니다!

중 소 벤 처 기 업 진 흥 공 단

# 기업성장 응답센터



규제 신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기업성장응답센터 연락처

수도권	강원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지역본부 02-2106-7412</li> <li>서울동남부지부 02-2023-4307</li> <li>서울북부지부 02-769-6422</li> <li>인천지역본부 032-837-7011</li> <li>인천서부지부 032-560-2372</li> <li>경기지역본부 031-260-4914</li> <li>경기동부지부 031-760-9008</li> <li>경기서부지부 031-783-0617</li> <li>경기남부지부 031-899-9112</li> <li>경기북부지부 031-920-672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원지역본부 033-269-6942</li> <li>강원영동지부 033-649-9373</li> </ul>
충청권	경상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전지역본부 042-281-3755</li> <li>세종지역본부 044-860-8305</li> <li>충남지역본부 041-589-4583</li> <li>충북지역본부 043-230-6824</li> <li>충북북부지부 043-841-363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지역본부 053-606-8418</li> <li>경북지역본부 054-440-5924</li> <li>경북동부지부 054-288-7351</li> <li>경북남부지부 053-603-3332</li> <li>울산지역본부 052-703-1121</li> <li>부산지역본부 051-630-7404</li> <li>부산동부지부 051-745-5922</li> <li>경남지역본부 055-270-9763</li> <li>경남동부지부 055-310-6623</li> <li>경남서부지부 055-751-2911</li> </ul>
전라권	제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지역본부 063-210-9913</li> <li>전북서부지부 063-460-9821</li> <li>광주지역본부 062-600-3031</li> <li>전남지역본부 061-280-8021</li> <li>전남동부지부 061-729-155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지역본부 064-754-5157</li> </ul>

#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2022년 11월